

제371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11월7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라돈안전특별법안

2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
4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9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9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4.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9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9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12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12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46.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8.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9.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0.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170. 속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과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
 가.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임종성 · 송옥주 · 김병기 · 서영교 · 이용득 · 심재권 · 권미혁 · 서삼석 · 남인순 · 이훈 · 홍익표 · 정재호 · 김철민 · 표창원 · 정춘숙 의원 발의)	15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박지원 · 정성호 · 박주현 · 이동섭 · 이용주 · 김광수 · 이명수 · 임재훈 · 설훈 · 정동영 · 황주홍 의원 발의)	15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이학영 · 전해철 · 김민기 · 흥의락 · 송갑석 · 신경민 · 맹성규 · 김철민 · 서영교 · 김성환 · 이훈 · 서삼석 · 설훈 · 유동수 · 김정호 · 박정 · 권미혁 · 정재호 · 심기준 · 강병원 · 윤준호 · 우원식 · 이용득 · 김상희 · 김병기 · 김정우 · 임종성 · 제윤경 의원 발의)	15
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 · 김상훈 · 김광립 · 유동수 · 정종섭 · 장병완 · 정유섭 · 김종민 · 안상수 · 박덕흠 · 이주영 의원 발의)	15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선 · 여영국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민홍철 · 김종훈 · 이용주 · 손혜원 의원 발의) 15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61) 15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5) 15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김성찬 · 윤준호 · 정인화 · 최도자 · 정동영 · 이종걸 · 장정숙 · 정운천 의원 발의) 15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신창현 · 백혜련 · 김동철 · 윤호중 · 최재성 · 유승희 · 김정호 · 김상희 · 서형수 의원 발의) 15
1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5
1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5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신창현 · 김성수 · 박광온 · 이정미 · 김세연 · 홍영표 · 문진국 · 김병욱 · 오제세 의원 발의) 15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이동섭 · 김민기 · 윤일규 · 김정호 · 오영훈 · 한정애 · 손혜원 · 신창현 · 김해영 의원 발의) 15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유승희 · 송갑석 · 최재성 · 이상현 · 박정 · 윤후덕 · 변재일 · 강훈식 · 황주홍 의원 발의) 15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고용진 · 백혜련 · 기동민 · 김성수 · 박홍근 · 김종민 · 심기준 · 유승희 · 김정호 · 이규희 · 윤관석 · 서형수 · 김상희 · 금태섭 · 이철희 의원 발의) 15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 · 박홍근 · 박완주 · 신창현 · 안호영 · 강훈식 · 김영춘 · 기동민 · 김병욱 · 김철민 · 맹성규 · 심재권 의원 발의) 16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조훈현 · 경대수 · 박덕흠 · 김태흠 · 추경호 · 김상훈 · 김도읍 · 곽대훈 · 이종배 의원 발의) 16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림 의원 발의) 16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신용현 · 정병국 · 이동섭 · 임재훈 · 김중로 · 윤한홍 · 강길부 · 조경태 · 유의동 의원 발의) 16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동섭 · 이찬열 · 김종희 · 송옥주 · 정동영 · 이언주 · 장정숙 · 이종걸 · 조배숙 의원 발의) 16
24. 냅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 · 유성엽 · 정동영 · 정인화 · 장정숙 · 손금주 · 이용호 · 이찬열 · 황주홍 · 경대수 · 오영훈 의원 발의) 16
25. 냅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6
26. 냅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 정양석 · 김동철 의원 발의) 16
27. 라돈안전특별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강훈식 · 홍익표 · 박재호 · 안호영 · 김철민 · 이후삼 · 송옥주 · 정세균 · 김병관 의원 발의) 16
2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림 의원 발의) 16
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황희 · 최인호 · 이규희 · 고용진 · 김

철민 · 박정 · 박광온 · 이학영 · 설훈 의원 발의)	16
3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6
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조용천 · 김현권 · 송갑석 · 박홍근 · 신창현 · 오제세 · 김진표 · 김민기 · 표창원 · 기동민 · 김성수 · 오영훈 의원 발의)	16
3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임재훈 · 김동철 · 김관영 · 이동섭 · 유승희 · 윤영일 · 황주홍 · 박광온 · 최도자 · 장정숙 의원 발의)	16
3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6
3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 · 정태옥 · 강효상 · 김광림 · 정진석 · 최교일 · 윤재옥 · 김정재 · 정종섭 · 곽상도 · 박명재 · 장석춘 · 김상훈 · 곽대훈 · 송언석 · 주호영 · 김규환 · 임이자 의원 발의)	16
3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심재철 · 김상훈 · 곽대훈 · 박성중 · 윤상직 · 김선동 · 엄용수 · 윤종필 · 송희경 · 전희경 의원 발의)	16
3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유동수 · 박홍근 · 송갑석 · 김성수 · 조용천 · 기동민 · 신창현 · 백혜련 · 김영호 · 오제세 의원 발의)	16
3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금태섭 · 박정 · 백혜련 · 변재일 · 송갑석 · 유승희 · 윤후덕 · 이상현 · 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03)	16
3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이상현 · 강훈식 · 이후삼 · 금태섭 · 송갑석 · 이원욱 · 정세균 · 신창현 · 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15)	16
3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6
4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 · 박홍근 · 박완주 · 신창현 · 안호영 · 강훈식 · 김영춘 · 기동민 · 김병욱 · 김철민 · 맹성규 · 심재권 의원 발의)	17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박홍근 · 위성곤 · 추미애 · 김민기 · 맹성규 · 조용천 · 이석현 · 고용진 · 송갑석 · 이용득 · 김병기 · 백재현 · 서삼석 · 한정애 · 전혜숙 · 노웅래 의원 발의)	17
4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한정애 · 김정호 · 정세균 · 이춘석 · 송영길 · 김정우 · 김경협 · 박용진 · 정성호 의원 발의)	17
43.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김동철 · 이동섭 · 김수민 · 유의동 · 하태경 · 정운천 · 김관영 · 지상욱 · 이해훈 · 이찬열 의원 발의)	17
4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윤준호 · 박재호 · 최인호 · 이종걸 · 정세균 · 김영춘 · 김정호 · 유성엽 · 이수혁 의원 발의)	17
4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7
4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7
47.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신창현 · 박범계 · 김종대 · 고용진 · 설훈 · 전현희 · 강창일 · 유승희 · 김경협 의원 발의)	17
48.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7
4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 · 김도읍 · 성일종 · 송희경 · 곽대훈 · 이언주 · 박맹우 · 이명수 · 윤종필 · 안상수 · 이종배 · 유민봉 의원 발의)	17
5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송희경 · 문진국 · 유민봉 · 윤종필 · 장석춘	

· 원유철 · 김규환 · 김용태 · 강석호 의원 발의)	17
5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김성원 · 최교일 · 정운천 · 성일종 · 김정재 · 김석기 · 최연혜 · 여상규 · 원유철 의원 발의)	17
5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17
5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민경욱 · 문진국 · 정운천 · 권성동 · 추경호 · 이양수 · 김정재 · 정태옥 · 정갑윤 의원 발의)	17
5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경진 · 김경협 · 김민기 · 김병기 · 송갑석 · 신창현 · 윤관석 · 이원욱 · 전혜숙 의원 발의)	17
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김철민 · 윤관석 · 윤일규 · 송갑석 · 이상현 · 이동섭 · 서영교 · 서형수 · 박홍근 · 한정애 의원 발의)	17
5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곽대훈 · 이진복 · 이학재 · 김상훈 · 추경호 · 김정재 · 김선동 · 김현아 · 임이자 · 한선교 의원 발의)	17
5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7
5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한정애 · 송갑석 · 이용득 · 서형수 · 설훈 · 신창현 · 김두관 · 김해영 · 박광온 의원 발의)	17
59.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금태섭 · 김영호 · 김종민 · 박정 · 신창 현 · 심기준 · 유동수 · 이상현 · 한정애 의원 발의)	17
6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 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7
6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추혜선 · 여영 국 · 심상정 · 위성곤 · 이용득 · 민홍철 · 김종훈 의원 발의)	18
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송희경 · 문진국 · 유민봉 · 윤종필 · 장석춘 · 원유철 · 김규환 · 강효상 · 김용태 의원 발의)	18
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이상돈 · 김종대 · 여영국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박홍근 · 황주홍 · 김두관 의원 발의)	18
6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임이자 · 김현아 · 성일종 · 김석기 · 이철규 · 이용득 · 경대수 · 정갑윤 · 강효상 · 김진태 · 김선동 · 민경욱 · 송언석 · 송희경 · 정병국 의원 발의)	18
6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 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8
6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8
6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정세균 · 이찬 열 · 신창현 · 송갑석 · 이개호 · 인재근 · 박홍근 · 강훈식 · 김현권 의원 발의)	18
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이언주 · 박덕흠 · 임이자 · 강석호 · 추경호 · 신상진 · 황주홍 · 김정재 · 홍문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00)	18
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신용현 · 김삼화 · 김중로 · 이종걸 · 홍영표 · 최운열 · 전재수 · 유승희 · 이혜훈 · 정동영 · 이진복 의원 발의)	18
7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이언주 · 박덕흠 · 임 이자 · 강석호 · 문진국 · 김정훈 · 신상진 · 황주홍 · 홍문종 · 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6)	18
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임종성 · 이개 호 · 정춘숙 · 설훈 · 김정호 · 김영춘 · 김병기 · 김영호 · 백혜련 의원 발의)	18

7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곽대훈 · 이진복 · 이학재 · 김상훈 · 추경호 · 김정재 · 김선동 · 김현아 · 임이자 · 한선교 의원 발의) 18
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8
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금태섭 · 김경협 · 박홍근 · 송갑석 · 신창현 · 오제세 · 이상현 · 임종성 · 전혜숙 의원 발의) 18
75.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8
76.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정태옥 · 성일종 · 한선교 · 김성원 · 박성중 · 문진국 · 신보라 · 주호영 · 김무성 · 김동철 · 민경욱 · 이학재 · 홍문표 의원 발의) 18
7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 · 송언석 · 정유섭 · 金成泰 · 김재경 · 송석준 · 최교일 · 김성찬 · 추경호 · 이은권 의원 발의) 18
7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 · 홍영표 · 백재현 · 서영교 · 전혜숙 · 권칠승 · 박홍근 · 박광온 · 홍익표 · 이춘석 의원 발의) 18
7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8
8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 · 이원욱 · 임종성 · 소병훈 · 김철민 · 신창현 · 송갑석 · 유동수 · 김영진 · 기동민 · 이용득 · 강훈식 · 윤후덕 · 서삼석 · 박정 · 최인호 · 설훈 의원 발의) 18
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백승주 · 서청원 · 박명재 · 김승희 · 윤종필 · 추경호 · 홍문표 · 원유철 · 경대수 · 김태흠 · 김기선 · 강석진 · 황영철 의원 발의) 19
8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원유철 · 정갑윤 · 박명재 · 이용득 · 장석춘 · 정운천 · 김현아 · 송희경 · 윤한홍 · 김선동 · 이철규 · 김규환 · 곽대훈 · 김석기 · 곽상도 · 김용태 · 정동영 · 임이자 의원 발의) 19
8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강창일 · 김영호 · 김철민 · 노웅래 · 박범계 · 심기준 · 안민석 · 이재정 · 인재근 · 임종성 의원 발의) 19
8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신창현 · 김종민 · 백혜련 · 김동철 · 윤호중 · 최재성 · 유승희 · 김정호 · 김상희 · 서형수 의원 발의) 19
8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조정식 · 심재권 · 심기준 · 이용득 · 한정애 · 이학영 · 안호영 · 노웅래 · 강병원 의원 발의) 19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 · 추경호 · 윤상직 · 이종배 · 곽대훈 · 이채익 · 정인화 · 이명수 · 정갑윤 · 장석춘 의원 발의) 19
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정갑윤 · 김승희 · 김성원 · 문진국 · 장석춘 · 홍문종 · 김학용 · 정병국 · 원유철 의원 발의) 19
8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정갑윤 · 원유철 · 박명재 · 이용득 · 장석춘 · 정운천 · 김현아 · 김선동 · 이철규 · 김규환 · 곽대훈 · 김석기 · 곽상도 · 임이자 · 임종성 의원 발의) 19
89.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박명재 · 문진국 · 추경호 · 최교일 · 김수민 · 강효상 · 송희경 · 송언석 · 원유철 · 한정애 의원 발의) 19
9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9
9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김병기 · 이석현 · 윤준호 · 고용진 · 백재현 · 전재수 · 김민기 · 소병훈 · 최인호 의원 발의) 19
9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황희 · 전재수 · 송갑석 · 이재정 · 최인호 ·

서영교 · 이춘석 · 김경협 · 김민기 의원 발의)	19
9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 정양석 · 김동철 의원 발의)	19
94.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 정양석 · 김동철 의원 발의)	19
9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금태섭 · 기동민 · 김성수 · 송갑석 · 신창현 · 이상현 · 이후삼 · 임종성 · 정세균 의원 발의)	19
9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9
9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림 의원 발의)	19
9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9
9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19
10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9
10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염동열 · 정갑윤 · 김승희 · 김성원 · 문진국 · 장석춘 · 홍문종 · 김학용 · 정태옥 의원 발의)	20
102.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20
10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0
10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 · 금태섭 · 유동수 · 이규희 · 박홍근 · 정인화 · 윤소하 · 신창현 · 송영길 · 이철희 · 맹성규 · 채이배 · 기동민 의원 발의)	20
10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20
10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박정 · 변재일 · 송갑석 · 신창현 · 유승희 · 윤후덕 · 이상현 · 황주홍 의원 발의)	20
10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김경협 · 이철규 · 김현아 · 신상진 · 김용태 · 이용득 · 박명재 · 정갑윤 · 김석기 · 김정재 · 경대수 · 김선동 · 정운천 · 임이자 · 김학용 · 이채익 · 최연혜 의원 발의)	20
10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0
109. 환경영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이용득 · 신창현 · 송옥주 · 백혜련 · 윤호중 · 강병원 · 기동민 · 김정호 · 김태년 · 고용진 의원 발의)	20
1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 · 강훈식 · 기동민 · 김부겸 · 남인순 · 박완주 · 박찬대 · 서영교 · 소병훈 · 윤소하 · 이규희 · 한정애 의원 발의)	20
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박선숙 · 최도자 · 주승용 · 김삼화 · 임재훈 · 박주선 · 원혜영 · 이춘석 · 김동철 의원 발의)	20
1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김철민 · 맹성규 · 서영교 · 윤준호 · 서삼석 · 김병기 · 노웅래 · 윤호중 · 우원식 의원 발의)	20
1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장석춘 · 윤종필 · 원유철 · 문진국 · 김승희 · 박명재 · 송희경 · 강효상 · 송언석 의원 발의)	20

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명연 · 최연혜 · 윤종필 · 박명재 · 김성원 · 홍문표 · 이은권 · 강석진 · 김태흠 · 김성찬 의원 발의)	20
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0
116.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천정배 · 안규백 · 이찬열 · 유후덕 · 김병기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20
1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박선숙 · 최도자 · 주승용 · 김삼화 · 임재훈 · 박주선 · 원혜영 · 이춘석 · 김동철 의원 발의)	20
1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경대수 · 박덕흠 · 송희경 · 전희경 · 정갑윤 · 홍일표 · 홍문표 · 안상수 · 홍철호 · 김종석 · 김순례 · 윤종필 · 유재중 · 이은권 · 김상훈 · 김재원 · 유민봉 의원 발의)	20
1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장병완 · 한정애 · 김경진 · 김삼화 · 정동영 · 채이배 · 박주선 · 이동섭 · 이용득 의원 발의)	20
120.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종걸 · 조승래 · 유성엽 · 오영훈 · 김두관 · 여기구 · 이용득 · 노웅래 · 이철희 · 도종환 · 민병두 · 김종민 · 박홍근 의원 발의)	21
12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21
1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안호영 · 김철민 · 신창현 · 송영길 · 우상호 · 손혜원 · 민홍철 · 윤호중 · 한정애 · 노웅래 의원 발의)	21
1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1
12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1
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곽대훈 · 김명연 · 김선동 · 김순례 · 김정재 · 박완수 · 박인숙 · 임이자 · 황영철 의원 발의)	21
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윤준호 · 송갑석 · 김성수 · 전해철 · 소병훈 · 김병기 · 박주민 · 최재성 · 박정 의원 발의)	21
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후덕 의원 대표발의)(유후덕 · 이찬열 · 금태섭 · 박정 · 김병기 · 심기준 · 전혜숙 · 정춘숙 · 김철민 · 이수혁 의원 발의)	21
1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현아 · 김정재 · 박순자 · 이현재 · 송언석 · 장석춘 · 김석기 · 유기준 · 홍문표 · 문진국 · 송희경 의원 발의)	21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정동영 · 주승용 · 이동섭 · 금태섭 · 신상진 · 김삼화 · 박선숙 · 이찬열 · 채이배 의원 발의)	21
1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원유철 · 추경호 · 박명재 · 김승희 · 유민봉 · 김광립 · 송희경 · 김용태 · 이종구 의원 발의)	21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노웅래 · 송옥주 · 서영교 · 강훈식 · 이재정 · 고용진 · 김병기 · 권칠승 · 민병두 의원 발의)	21
1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종희 · 이동섭 · 위성곤 · 김광수 · 유승희 · 유동수 · 안민석 · 김철민 · 인재근 · 채이배 의원 발의)	21
1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금태섭 · 유동수 · 여기구 · 최운열 · 조응천 · 유후덕 · 서영교 · 민병두 · 전혜숙 · 김병욱 · 고용진 · 윤준호 · 안호영 · 김현권 · 김철민 · 김	

병관 · 이규희 · 김한정 · 정성호 · 노웅래 · 안규백 의원 발의)	21
1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남인순 · 여영국 · 김종훈 · 장정숙 · 송옥주 의원 발의)	21
1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정성호 · 박홍근 · 박재호 · 김경협 · 홍익표 · 윤일규 · 김민기 · 김상희 · 신창현 · 홍영표 · 민홍철 · 안규백 · 신경민 · 맹성규 · 송갑석 · 김정호 · 서형수 · 윤후덕 의원 발의)	21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하태경 · 정병국 · 박주선 · 신용현 · 임재훈 · 최도자 · 정동영 · 이동섭 · 권은희 의원 발의)	21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문진국 · 임종성 · 이용득 · 서형수 · 박정 · 김현권 · 최인호 · 김정호 · 송옥주 의원 발의)	21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1
1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윤준호 · 설훈 · 인재근 · 박홍근 · 우원식 · 이찬열 · 김영춘 · 김현권 · 이개호 의원 발의)	21
14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1
14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강길부 · 김경진 · 서형수 · 윤후덕 · 김경협 · 김병관 · 김상희 · 신창현 · 송옥주 · 이용득 · 설훈 · 강훈식 · 박재호 · 김정호 · 안규백 의원 발의)	21
1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22
1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김삼화 · 주승용 · 이찬열 · 유승희 · 한정애 · 황주홍 · 임재훈 · 김중로 · 권은희 의원 발의)	22
14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위성곤 · 김병기 · 김정호 · 조웅천 · 여기구 · 최재성 · 맹성규 · 정세균 · 노웅래 의원 발의)	22
1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남인순 · 여영국 · 김종훈 · 장정숙 · 송옥주 의원 발의)	22
146.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곽대훈 · 김명연 · 김선동 · 김순례 · 김정재 · 박완수 · 박인숙 · 임이자 · 황영철 의원 발의)	22
14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문진국 · 최인호 · 김정호 · 김현권 · 정춘숙 · 송옥주 · 이용득 · 서형수 · 이후삼 · 임종성 의원 발의)	22
148.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광림 · 김성원 · 이만희 · 함진규 · 김태흠 · 권성동 · 정점식 · 이철규 · 김석기 · 홍문표 의원 발의)	22
149.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2
150.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임재훈 · 천정배 · 정동영 · 김종희 · 김광수 · 이용주 · 박완주 · 박찬대 · 장병완 · 유성엽 · 박지원 · 황주홍 의원 발의)	22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 · 송희경 · 정병국 · 문진국 · 강석호 · 박명재 · 곽대훈 · 임이자 · 원유철 · 김정재 의원 발의)	22
15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소병훈 · 유승희 · 이종걸 · 이용득 · 기동민 · 여기구 · 김민기 · 강창일 · 박정 · 위성곤 의원 발의)	22
1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추경호 · 안상수 · 김광림 · 김순례 · 이은권 · 정양석 · 강석진 · 강효상 · 김규환 · 김태흠 · 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17)	22

1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추경호 · 안상수 · 김광립 · 김순례 · 이은권 · 정양석 · 강석진 · 강효상 · 김규환 · 김태흠 · 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50) 22
1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안상수 · 김광립 · 김순례 · 이은권 · 정양석 · 강석진 · 강효상 · 김규환 · 김태흠 · 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84) 22
1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2
1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안호영 · 김철민 · 신창현 · 송영길 · 우상호 · 손혜원 · 민홍철 · 윤호중 · 한정애 · 노웅래 의원 발의) 22
15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2
15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1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이은권 · 김성원 · 서청원 · 성일종 · 정유섭 · 원유철 · 윤영석 · 윤종필 · 김태흠 의원 발의) 22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윤상직 · 원유철 · 권성동 · 유의동 · 송희경 · 박덕흠 · 김석기 · 서청원 · 김영우 의원 발의) 22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호영 · 임종성 · 어기구 · 강훈식 · 김정호 · 신창현 · 김경협 · 윤후덕 · 서형수 · 맹성규 · 김병욱 · 이정미 · 송옥주 · 백혜련 · 이찬열 의원 발의) 23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송영길 · 김경협 · 고용진 · 전재수 · 유동수 · 심기준 · 박홍근 · 강병원 · 추미애 의원 발의) 23
1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박명재 · 김수민 · 유성엽 · 김승희 · 김상훈 · 권성동 · 정점식 · 박맹우 · 박성중 의원 발의) 23
1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박정 · 송옥주 · 정성호 · 김정호 · 김경협 · 흥익표 · 서형수 · 권미혁 · 진선미 · 흥영표 · 박경미 의원 발의) 23
1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천정배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23
1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장석준 · 윤종필 · 원유철 · 문진국 · 김승희 · 박명재 · 송희경 · 강효상 · 송언석 의원 발의) 23
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3
169.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추경호 · 정태옥 · 김정재 · 정종섭 · 이은권 · 유민봉 · 김성원 · 윤상직 · 김기선 · 이종구 의원 발의) 23
170.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17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3
1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정동영 · 주승용 · 이동섭 · 금태섭 · 신상진 · 전혜숙 · 이찬열 · 채이배 · 김동철 의원 발의) 23
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원유철 · 김승희 · 김용태 · 추경호 · 박명재 · 장석준 · 박인숙 · 문진국 · 한정애 · 송희경 의원 발의) 23
1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김세연 · 이현재 · 이명수 · 박덕흠 · 이완영 · 김명연 · 윤영석 · 이종명 · 이양수 의원 발의) 23
1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3
1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임이자 · 정태옥 · 홍

문표 · 金成泰 · 함진규 · 신보라 · 김무성 · 김성원 · 민경욱 의원 발의)	23
17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남인순 · 여영국 · 김종훈 · 장정숙 · 송옥주 의원 발의)	23
17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3
17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장병완 · 원유철 · 이동섭 · 오영훈 · 경대수 · 정동영 · 박주현 · 위성곤 의원 발의)	23
1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윤준호 · 설훈 · 인재근 · 송갑석 · 박홍근 · 기동민 · 우원식 · 이찬열 · 김현권 의원 발의)	23
18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3
1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 · 김상훈 · 이만희 · 최교일 · 김한표 · 박덕흠 · 김재경 · 정유섭 · 강석진 · 김학용 의원 발의)	23
1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 · 김선동 · 최교일 · 김광림 · 김정재 · 홍철호 · 박명재 · 엄용수 · 윤상직 · 이채익 · 정갑윤 · 이종구 · 정태옥 의원 발의)	23
1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태옥 · 김성찬 · 김정재 · 이종배 · 이종구 · 김기선 · 정유섭 · 이은권 · 윤상직 의원 발의)	23
18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광수 · 장정숙 · 이동섭 · 김관영 · 유동수 · 정동영 · 권은희 · 황주홍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24
18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남인순 · 여영국 · 김종훈 · 장정숙 · 송옥주 의원 발의)	24
18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24
188.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	32
가. 고용노동부 소관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47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7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47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바로 직전에 종료한 관계로 법안을 먼저 상정한 후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의결한 다음 현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차관과 기상청 차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김학용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7항, 제

8항, 제26항, 제58항, 제93항, 제94항, 제122항, 제157항 및 제165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간사위원님들 간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임종성 · 송옥주 · 김병기 · 서영교 · 이용득 · 심재권 · 권미혁 · 서삼석 · 남인순 · 이훈 · 홍익표 · 정재호 · 김철민 · 표창원 · 정춘숙 의원 발의)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박지원 · 정성호 · 박주현 · 이동섭 · 이용주 · 김광수 · 이명수 · 임재훈 · 설훈 · 정동영 · 황주홍 의원 발의)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이학영 · 전해철 · 김민기 · 홍의락 · 송갑석 · 신경민 · 맹성규 · 김철민 · 서영교 · 김성환 · 이훈 · 서삼석 · 설훈 · 유동수 · 김정호 · 박정 · 권미혁 · 정재호 · 심기준 · 강병원 · 윤준호 · 우원식 · 이용득 · 김상희 · 김병기 · 김정우 · 임종성 · 제윤경 의원 발의)

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 · 김상훈 · 김광립 · 유동수 · 정종섭 · 장병완 · 정유섭 · 김종민 · 안상수 · 박덕흠 · 이주영 의원 발의)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선 · 여영국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민홍철 · 김종훈 · 이용주 · 손혜원 의원 발의)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61)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5)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김성찬 · 윤준호 · 정인화 · 최도자 · 정동영 · 이종걸 · 장정숙 · 정운천 의원 발의)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신창현 · 백혜련 · 김동철 · 윤호중 · 최재성 · 유승희 · 김정호 · 김상희 · 서형수 의원 발의)

1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신창현 · 김성수 · 박광온 · 이정미 · 김세연 · 홍영표 · 문진국 · 김병욱 · 오제세 의원 발의)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이동섭 · 김민기 · 윤일규 · 김정호 · 오영훈 · 한정애 · 손혜원 · 신창현 · 김해영 의원 발의)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유승희 · 송갑석 · 최재성 · 이상현 · 박정 · 윤후덕 · 변재일 · 강훈식 · 황주홍 의원 발의)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고용진 · 백혜련 · 기동민 · 김성수 · 박홍근 · 김종민 · 심기준 · 유승희 · 김정호 · 이규희 · 윤관석 · 서형수 · 김상희 · 금태섭 · 이철희 의원 발의)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발의)

- 원 대표발의)(서삼석 · 박홍근 · 박완주 · 신창현 · 안호영 · 강훈식 · 김영춘 · 기동민 · 김병욱 · 김철민 · 맹성규 · 심재권 의원 발의)
-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조훈현 · 경대수 · 박덕흠 · 김태흠 · 추경호 · 김상훈 · 김도읍 · 곽대훈 · 이종배 의원 발의)
-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립 의원 발의)
-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신용현 · 정병국 · 이동섭 · 임재훈 · 김중로 · 윤한홍 · 강길부 · 조경태 · 유의동 의원 발의)
-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동섭 · 이찬열 · 김종희 · 송옥주 · 정동영 · 이언주 · 장정숙 · 이종걸 · 조배숙 의원 발의)
-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 · 유성엽 · 정동영 · 정인화 · 장정숙 · 손금주 · 이용호 · 이찬열 · 황주홍 · 경대수 · 오영훈 의원 발의)
- 2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2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 정양석 · 김동철 의원 발의)
- 27. 라돈안전특별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강훈식 · 홍익표 · 박재호 · 안호영 · 김철민 · 이후삼 · 송옥주 · 정세균 · 김병관 의원 발의)
- 2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립 의원 발의)
- 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황희 · 최인호 · 이규희 · 고용진 · 김철민 · 박정 · 박광온 · 이학

- 영 · 설훈 의원 발의)
- 3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조웅천 · 김현권 · 송갑석 · 박홍근 · 신창현 · 오제세 · 김진표 · 김민기 · 표창원 · 기동민 · 김성수 · 오영훈 의원 발의)
- 3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임재훈 · 김동철 · 김관영 · 이동섭 · 유승희 · 윤영일 · 황주홍 · 박광온 · 최도자 · 장정숙 의원 발의)
- 3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3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 · 정태옥 · 강효상 · 김광립 · 정진석 · 최교일 · 윤재옥 · 김정재 · 정종섭 · 곽상도 · 박명재 · 장석춘 · 김상훈 · 곽대훈 · 송언석 · 주호영 · 김규환 · 임이자 의원 발의)
- 3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심재철 · 김상훈 · 곽대훈 · 박성중 · 윤상직 · 김선동 · 염용수 · 윤종필 · 송희경 · 전희경 의원 발의)
- 3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유동수 · 박홍근 · 송갑석 · 김성수 · 조웅천 · 기동민 · 신창현 · 백혜련 · 김영호 · 오제세 의원 발의)
- 3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금태섭 · 박정 · 백혜련 · 변재일 · 송갑석 · 유승희 · 윤후덕 · 이상현 · 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03)
- 3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이상현 · 강훈식 · 이후삼 · 금태섭 · 송갑석 · 이원욱 · 정세균 · 신창현 · 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15)
- 3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

- 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4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 · 박홍근 · 박완주 · 신창현 · 안호영 · 강훈식 · 김영춘 · 기동민 · 김병욱 · 김철민 · 맹성규 · 심재권 의원 발의)
-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박홍근 · 위성곤 · 추미애 · 김민기 · 맹성규 · 조웅천 · 이석현 · 고용진 · 송갑석 · 이용득 · 김병기 · 백재현 · 서삼석 · 한정애 · 전혜숙 · 노웅래 의원 발의)
- 4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한정애 · 김정호 · 정세균 · 이춘석 · 송영길 · 김정우 · 김경협 · 박용진 · 정성호 의원 발의)
- 43.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 법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김동철 · 이동섭 · 김수민 · 유의동 · 하태경 · 정운천 · 김관영 · 지상욱 · 이혜훈 · 이찬열 의원 발의)
- 4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 · 윤준호 · 박재호 · 최인호 · 이종걸 · 정세균 · 김영춘 · 김정호 · 유성엽 · 이수혁 의원 발의)
- 4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4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4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신창현 · 박범계 · 김종대 · 고용진 · 설훈 · 전현희 · 강창일 · 유승희 · 김경협 의원 발의)
- 4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4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 · 김도읍 · 성일종 · 송희경 · 광대훈 · 이연주 · 박맹우 · 이명수 · 윤종필 · 안상수 · 이종배 · 유민봉 의원 발의)
- 5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송희경 · 문진국 · 유민봉 · 윤종필 · 장석춘 · 원유철 · 김규환 · 김용태 · 장석호 의원 발의)
- 5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김성원 · 최교일 · 정운천 · 성일종 · 김정재 · 김석기 · 최연혜 · 여상규 · 원유철 의원 발의)
- 5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 5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민경욱 · 문진국 · 정운천 · 권성동 · 추경호 · 이양수 · 김정재 · 정태옥 · 정갑윤 의원 발의)
- 5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경진 · 김경협 · 김민기 · 김병기 · 송갑석 · 신창현 · 윤관석 · 이원욱 · 전혜숙 의원 발의)
- 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김철민 · 윤관석 · 윤일규 · 송갑석 · 이상현 · 이동섭 · 서영교 · 서형수 · 박홍근 · 한정애 의원 발의)
- 5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광대훈 · 이진복 · 이학재 · 김상훈 · 추경호 · 김정재 · 김선동 · 김현아 · 임이자 · 한선교 의원 발의)
- 5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5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한정애 · 송갑석 · 이용득 · 서형수 · 설훈 · 신창현 · 김두관 · 김해영 · 박광온 의원 발의)
- 59.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금태섭 · 김영호 · 김종민 · 박정 · 신창현 · 심기준 · 유동수 · 이상현 · 한정애 의원 발의)
- 6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

- 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6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추혜선 · 여영국 · 심상정 · 위성곤 · 이용득 · 민홍철 · 김종훈 의원 발의)
- 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송희경 · 문진국 · 유민봉 · 윤종필 · 장석춘 · 원유철 · 김규환 · 강효상 · 김용태 의원 발의)
- 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이상돈 · 김종대 · 여영국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박홍근 · 황주홍 · 김두관 의원 발의)
- 6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임이자 · 김현아 · 성일종 · 김석기 · 이철규 · 이용득 · 경대수 · 정갑윤 · 강효상 · 김진태 · 김선동 · 민경욱 · 송언석 · 송희경 · 정병국 의원 발의)
- 6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6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6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정세균 · 이찬열 · 신창현 · 송갑석 · 이개호 · 인재근 · 박홍근 · 강훈식 · 김현권 의원 발의)
- 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이언주 · 박덕흠 · 임이자 · 강석호 · 추경호 · 신상진 · 황주홍 · 김정재 · 홍문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00)
- 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신용현 · 김삼화 · 김중로 · 이종걸 · 홍영표 · 최운열 · 전재수 · 유승희 · 이혜훈 · 정동영 · 이진복 의원 발의)
- 7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이언주 · 박덕흠 · 임이자 · 강석호 · 문진국 · 김정훈 · 신상진 · 황주홍 · 홍문종 · 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6)
- 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임종성 · 이개호 · 정춘숙 · 설훈 · 김정호 · 김영춘 · 김병기 · 김영호 · 백혜련 의원 발의)
- 7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곽대훈 · 이진복 · 이학재 · 김상훈 · 추경호 · 김정재 · 김선동 · 김현아 · 임이자 · 한선교 의원 발의)
- 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금태섭 · 김경협 · 박홍근 · 송갑석 · 신창현 · 오제세 · 이상현 · 임종성 · 전혜숙 의원 발의)
- 75.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76.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정태옥 · 성일종 · 한선교 · 김성원 · 박성중 · 문진국 · 신보라 · 주호영 · 김무성 · 김동철 · 민경욱 · 이학재 · 홍문표 의원 발의)
- 7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 · 송언석 · 정유섭 · 金成泰 · 김재경 · 송석준 · 최교일 · 김성찬 · 추경호 · 이은권 의원 발의)
- 7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 · 홍영표 · 백재현 · 서영교 · 전혜숙 · 권칠승 · 박홍근 · 박광온 · 홍익표 · 이춘석 의원 발의)
- 7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8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 · 이원욱 · 임종성 · 소

- 병훈 · 김철민 · 신창현 · 송갑석 · 유동수 ·
김영진 · 기동민 · 이용득 · 강훈식 · 윤후
덕 · 서삼석 · 박정 · 최인호 · 설훈 의원 발의)
- 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백승주 · 서청원 · 박명
재 · 김승희 · 윤종필 · 추경호 · 홍문표 · 원
유철 · 경대수 · 김태흠 · 김기선 · 강석진 ·
황영철 의원 발의)**
- 8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원유철 · 정갑윤 · 박명
재 · 이용득 · 장석춘 · 정운천 · 김현아 · 송
희경 · 윤한홍 · 김선동 · 이철규 · 김규환 ·
곽대훈 · 김석기 · 곽상도 · 김용태 · 정동
영 · 임이자 의원 발의)**
- 8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강창일 · 김영호 · 김철
민 · 노웅래 · 박범계 · 심기준 · 안민석 · 이
재정 · 인재근 · 임종성 의원 발의)**
- 8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
의)(한정애 · 신창현 · 김종민 · 백혜련 · 김
동철 · 윤호중 · 최재성 · 유승희 · 김정호 ·
김상희 · 서형수 의원 발의)**
- 8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
의)(전현희 · 조정식 · 심재권 · 심기준 · 이
용득 · 한정애 · 이학영 · 안호영 · 노웅래 ·
강병원 의원 발의)**
-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 · 추경호 · 윤상직 · 이종
배 · 곽대훈 · 이채익 · 정인화 · 이명수 · 정
갑윤 · 장석춘 의원 발의)**
- 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정갑윤 · 김승희 · 김성
원 · 문진국 · 장석춘 · 홍문종 · 김학용 · 정
병국 · 원유철 의원 발의)**
- 8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정갑윤 · 원유철 · 박명
재 · 이용득 · 장석춘 · 정운천 · 김현아 · 김
선동 · 이철규 · 김규환 · 곽대훈 · 김석기 ·
곽상도 · 임이자 · 임종성 의원 발의)**
- 89.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

- 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박명
재 · 문진국 · 추경호 · 최교일 · 김수민 · 강
효상 · 송희경 · 송언석 · 원유철 · 한정애 의
원 발의)**
- 9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
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9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신창현 · 김병기 · 이석현 · 윤준호 ·
고용진 · 백재현 · 전재수 · 김민기 · 소병
훈 · 최인호 의원 발의)**
- 9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
의)(홍익표 · 황희 · 전재수 · 송갑석 · 이재
정 · 최인호 · 서영교 · 이춘석 · 김경협 · 김
민기 의원 발의)**
- 9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 정진석 · 강효
상 · 박성중 · 정양석 · 김동철 의원 발의)**
- 94.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
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 문
진국 · 신보라 · 이종배 ·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 정양석 · 김동철 의원 발의)**
- 9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
원 대표발의)(송옥주 · 금태섭 · 기동민 · 김
성수 · 송갑석 · 신창현 · 이상현 · 이후삼 ·
임종성 · 정세균 의원 발의)**
- 9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
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
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9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
재 · 임이자 · 문진국 · 이종배 · 황주홍 · 황
영철 · 윤영일 · 이종구 · 송언석 · 김광립 의
원 발의)**
- 9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
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
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
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9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
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
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10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0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염동열 · 정갑윤 · 김승희 · 김성원 · 문진국 · 장석춘 · 홍문종 · 김학용 · 정태옥 의원 발의)
102.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10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0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 · 금태섭 · 유동수 · 이규희 · 박홍근 · 정인화 · 윤소하 · 신창현 · 송영길 · 이철희 · 맹성규 · 채이배 · 기동민 의원 발의)
10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10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박정 · 변재일 · 송갑석 · 신창현 · 유승희 · 윤후덕 · 이상현 · 황주홍 의원 발의)
10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김경협 · 이철규 · 김현아 · 신상진 · 김용태 · 이용득 · 박명재 · 정갑윤 · 김석기 · 김정재 · 경대수 · 김선동 · 정운천 · 임이자 · 김학용 · 이채익 · 최연혜 의원 발의)
10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0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 원 대표발의)(한정애 · 이용득 · 신창현 · 송옥주 · 백혜련 · 윤호중 · 강병원 · 기동민 · 김정호 · 김태년 · 고용진 의원 발의)
1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 · 강훈식 · 기동민 · 김부겸 · 남인순 · 박완주 · 박찬대 · 서영교 · 소병훈 · 윤소하 · 이규희 · 한정애 의원 발의)
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박선숙 · 최도자 · 주승용 · 김삼화 · 임재훈 · 박주선 · 원혜영 · 이춘석 · 김동철 의원 발의)
1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김철민 · 맹성규 · 서영교 · 윤준호 · 서삼석 · 김병기 · 노웅래 · 윤호중 · 우원식 의원 발의)
1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장석춘 · 윤종필 · 원유철 · 문진국 · 김승희 · 박명재 · 송희경 · 강효상 · 송언석 의원 발의)
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명연 · 최연혜 · 윤종필 · 박명재 · 김성원 · 홍문표 · 이은권 · 강석진 · 김태흠 · 김성찬 의원 발의)
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16.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천정배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1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박선숙 · 최도자 · 주승용 · 김삼화 · 임재훈 · 박주선 · 원혜영 · 이춘석 · 김동철 의원 발의)
1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경대수 · 박덕흠 · 송희

경 · 전희경 · 정갑윤 · 홍일표 · 홍문표 · 안상수 · 홍철호 · 김종석 · 김순례 · 윤종필 · 유재중 · 이은권 · 김상훈 · 김재원 · 유민봉 의원 발의)

1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장병완 · 한정애 · 김경진 · 김삼화 · 정동영 · 채이배 · 박주선 · 이동섭 · 이용득 의원 발의)

120.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종결 · 조승래 · 유성엽 · 오영훈 · 김두관 · 어기구 · 이용득 · 노웅래 · 이철희 · 도종환 · 민병두 · 김종민 · 박홍근 의원 발의)

12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이학영 · 전재수 · 정세균 · 박재호 · 윤준호 · 강훈식 · 김영춘 · 안호영 의원 발의)

1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안호영 · 김철민 · 신창현 · 송영길 · 우상호 · 손혜원 · 민홍철 · 윤호중 · 한정애 · 노웅래 의원 발의)

1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2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곽대훈 · 김명연 · 김선동 · 김순례 · 김정재 · 박완수 · 박인숙 · 임이자 · 황영철 의원 발의)

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윤준호 · 송갑석 · 김성수 · 전해철 · 소병훈 · 김병기 · 박주민 · 최재성 · 박정 의원 발의)

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이찬열 · 금태섭 · 박정 · 김병기 · 심기준 · 전혜숙 · 정춘숙 · 김철민 · 이수혁 의원 발의)

1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현아 · 김정재 · 박순자 · 이현재 · 송언석 · 장석춘 · 김석기 · 유기준 · 홍문표 · 문진국 · 송희경 의원 발의)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 · 정동영 · 주승용 · 이동섭 · 금태섭 · 신상진 · 김삼화 · 박선숙 · 이찬열 · 채이배 의원 발의)

1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원유철 · 추경호 · 박명재 · 김승희 · 유민봉 · 김광립 · 송희경 · 김용태 · 이종구 의원 발의)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노웅래 · 송옥주 · 서영교 · 강훈식 · 이재정 · 고용진 · 김병기 · 권칠승 · 민병두 의원 발의)

1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종희 · 이동섭 · 위성곤 · 김광수 · 유승희 · 유동수 · 안민석 · 김철민 · 인재근 · 채이배 의원 발의)

1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금태섭 · 유동수 · 어기구 · 최운열 · 조용천 · 윤후덕 · 서영교 · 민병두 · 전혜숙 · 김병우 · 고용진 · 윤준호 · 안호영 · 김현권 · 김철민 · 김병관 · 이규희 · 김한정 · 정성호 · 노웅래 · 안규백 의원 발의)

1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남인순 · 여영국 · 김종훈 · 장정숙 · 송옥주 의원 발의)

1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정성호 · 박홍근 · 박재호 · 김경협 · 홍익표 · 윤일규 · 김민기 · 김상희 · 신창현 · 홍영표 · 민홍철 · 안규백 · 신경민 · 맹성규 · 송갑석 · 김정호 · 서형수 · 윤후덕 의원 발의)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하태경 · 정병국 · 박주선 · 신용현 · 임재훈 · 최도자 · 정동영 · 이동섭 · 권은희 의원 발의)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문진국 · 임종성 · 이용득 · 서형수 · 박정 · 김현권 · 최인호 · 김정호 · 송옥주 의원 발의)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

표발의)(오영훈·윤준호·설훈·인재근·
박홍근·우원식·이찬열·김영춘·김현
권·이개호 의원 발의)

14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노옹래 의원 발의)

14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길부·김경진·서형수·윤후덕·김경협·김병관·김상희·신창현·송옥주·이용득·설훈·강훈식·박재호·김정호·안규백 의원 발의)

1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현·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1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삼화·주승용·이찬열·유승희·한정애·황주홍·임재훈·김중로·권은희 의원 발의)

14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위성곤·김병기·김정호·조웅천·어기구·최재성·맹성규·정세균·노옹래 의원 발의)

1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남인순·여영국·김종훈·장정숙·송옥주 의원 발의)

1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대훈·김명연·김선동·김순례·김정재·박완수·박인숙·임이자·황영철 의원 발의)

1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문진국·최인호·김정호·김현권·정춘숙·송옥주·이용득·서형수·이후삼·임종성 의원 발의)

1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김광림·김성원·이만희·함진규·김태흠·권성동·정점식·이철규·김석기·홍문표 의원 발의)

1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노옹래 의원 발의)

1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임재훈·천정배·정동영·김종희·김광수·이용주·박완주·박찬대·장병완·유성엽·박지원·황주홍 의원 발의)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송희경·정병국·문진국·강석호·박명재·곽대훈·임이자·원유철·김정재 의원 발의)

1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소병훈·유승희·이종결·이용득·기동민·어기구·김민기·강창일·박정·위성곤 의원 발의)

1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추경호·안상수·김광림·김순례·이은권·정양석·강석진·강효상·김규환·김태흠·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17)

1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추경호·안상수·김광림·김순례·이은권·정양석·강석진·강효상·김규환·김태흠·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50)

1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안상수·김광림·김순례·이은권·정양석·강석진·강효상·김규환·김태흠·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84)

1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노옹래 의원 발의)

1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안호영·김철민·신창현·송영길·우상호·손혜원·민홍철·윤호중·한정애·노옹래 의원 발의)

15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창

- 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15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이은권 · 김성원 · 서청원 · 성일종 · 정유섭 · 원유철 · 윤영석 · 윤종필 · 김태흠 의원 발의)
-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윤상직 · 원유철 · 권성동 · 유의동 · 송희경 · 박덕흠 · 김석기 · 서청원 · 김영우 의원 발의)
-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호영 · 임종성 · 어기구 · 강훈식 · 김정호 · 신창현 · 김경협 · 윤후덕 · 서형수 · 맹성규 · 김병욱 · 이정미 · 송옥주 · 백혜련 · 이찬열 의원 발의)
-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송영길 · 김경협 · 고용진 · 전재수 · 유동수 · 심기준 · 박홍근 · 강병원 · 추미애 의원 발의)
- 1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박명재 · 김수민 · 유성엽 · 김승희 · 김상훈 · 권성동 · 정점식 · 박맹우 · 박성중 의원 발의)
- 1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박정 · 송옥주 · 정성호 · 김정호 · 김경협 · 흥익표 · 서형수 · 권미혁 · 진선미 · 흥영표 · 박경미 의원 발의)
- 1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천정배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 1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장석춘 · 윤종필 · 원유철 · 문진국 · 김승희 · 박명재 · 송희경 · 강효상 · 송언석 의원 발의)
- 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169.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추경호 · 정태옥 · 김정재 · 정종섭 · 이은권 · 유민봉 · 김성원 · 윤상직 · 김기선 · 이종구 의원 발의)
- 170.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1. 임금체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172. 임금체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정동영 · 주승용 · 이동섭 · 금태섭 · 신상진 · 전혜숙 · 이찬열 · 채이배 · 김동철 의원 발의)
- 173. 임금체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원유철 · 김승희 · 김용태 · 추경호 · 박명재 · 장석춘 · 박인숙 · 문진국 · 한정애 · 송희경 의원 발의)
- 1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김세연 · 이현재 · 이명수 · 박덕흠 · 이완영 · 김명연 · 윤영석 · 이종명 · 이양수 의원 발의)
- 1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1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임이자 · 정태옥 · 홍문표 · 金成泰 · 함진규 · 신보라 · 김무성 · 김성원 · 민경욱 의원 발의)
- 17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남인순 · 여영국 · 김종훈 · 장정숙 · 송옥주 의원 발의)
- 17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 17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장병완 · 원유철 · 이동섭 · 오영훈 · 경대수 · 정동영 · 박주현 · 위성곤 의원 발의)
- 1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 · 윤준호 · 설훈 · 인재근 · 송갑석 · 박홍근 · 기동민 · 우원식 · 이찬열 · 김현권 의원 발의)
- 18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

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
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
표발의)(송석준 · 김상훈 · 이만희 · 최교
일 · 김한표 · 박덕흠 · 김재경 · 정유섭 · 강
석진 · 김학용 의원 발의)

1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
표발의)(추경호 · 김선동 · 최교일 · 김광
림 · 김정재 · 홍철호 · 박명재 · 엄용수 · 윤
상직 · 이채익 · 정갑윤 · 이종구 · 정태옥 의
원 발의)

1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
표발의)(곽대훈 · 정태옥 · 김성찬 · 김정
재 · 이종배 · 이종구 · 김기선 · 정유섭 · 이
은권 · 윤상직 의원 발의)

18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
표발의)(이찬열 · 김광수 · 장정숙 · 이동
섭 · 김관영 · 유동수 · 정동영 · 권은희 · 황
주홍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18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추혜
선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남인순 · 여
영국 · 김종훈 · 장정숙 · 송옥주 의원 발의)

18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
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신창현 · 김철
민 · 박광온 · 기동민 · 조정식 · 임종성 · 권
칠승 · 심재권 · 이후삼 · 노웅래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7항까지 184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배숙 의원님이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의 시간이 유동적인 바람에 아마 시간을
맞추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
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 존경하는 환경노동위 김학용 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현희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
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

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발의를 했
지만 우선 중점 법안으로 이렇게 상정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체로 한 구제급여와 그리고 기업의 분
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을 구분하여 구제대책을 차별화하고 있어서 피해
자들의 불공정 시비와 불만을 사고 있는 그리고
피해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
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배상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
자가 소송 등에서 피해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기
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
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
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피해자 집단소
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의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한 획기적
인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본 개정안에는 집단적인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증거개시
명령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증거개시
명령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고, 당사자
요청에 따라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
령하는 제도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불
법행위 증거를 밝히기 까다로운 경우에 적극적으
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피해 입증에 도움
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피
해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입법 공청회와
의견청취 간담회 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많

은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해서 준비해 온 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구제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법안입니다.

부디 본 법안의 개정안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우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법안 마련에 힘을 보태 주셨는데요. 조명래 장관님을 비롯해서 환경부 공무원들께 다시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는 마음속으로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시을이 지역구이십니다.

○조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속인데 이번에 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인데요, 거기에 접수된 민원에서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자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페트 항균제용 PHMG, 고무·목재·직물 향균제용 PGH 또 냉각수 탱크 박테리아 제거용 CMIT/MIT 이런 성분을 사람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로 판매해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된 건만 6616명에 이르고 사상자는 1452명에 달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는 질환의 종류

와 피해범위, 질병 발현시기 등을 참조할 사례가 없습니다.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건강피해는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했고,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 만한 사례가 없어서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인을 요구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참조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역학조사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환경오염 건강피해와 같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피해자 구제비용을 대위하고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자를 구제급여 대상자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대상자를 구제계정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이런 구조는 첫째, 피해자를 협소하게 인정하게 만들었고 둘째, 정부가 건강피해 여부 및 중증 정도를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과 간병비를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해서 피해자가 건강피해로 입은 손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구제위원회의 피해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판정을 받아도 재심사로 구제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을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발굴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발굴 방법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현행법의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단체 대표들과 장시간 협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폐섬유화,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 폐기종 및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전신성 질환을 포함하고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유산·사산 및 출생 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이로 인하여 파생된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했고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하지 않도록 ‘피해등급’을 ‘피해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기준’으로 개칭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요양생활수당과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일을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피해판정에 이의신청하는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재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굴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의심자 정의를 새롭게 두어서 이들이 자신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다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이 참사의 규모는 전국적이며 피해기간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참사 피해를 축소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무수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함께 만든 본 개정안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이 지역구이신 정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의원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 논의를 간절하게 바라는 가습기 피해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수렴해 가지고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 김학용 위원장님, 한정애·임이자·김동철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원식 의원님 발의로 작년 7월에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정부의 부분적 과오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법입니다마는 아직 가습기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일부 불충분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제안한 법안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현행법은 판정 등급 조정 재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초기 등급 판정 당시 심사를 진행했던 위원에게 똑같은 서류로 같은 심사를 받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들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경우는 장례비와 조위금밖에 지원되지 않고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이 미비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개정안에는 위로금과 일실손해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통합하고 추가 재원 마련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마련되는 구제급여와 가해기업의 자금으로 마련되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합

해 피해지원기금을 운용하고 기금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안은 환경부와 가습기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와 적극 협의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담지 않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가습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펼쳐 주신 전현희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그리고 정태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의 법안은 20대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는 입법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속도를 내서 이번 20대 국회 내에,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호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의원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현재 토양정화업을 규율하고 있는 현 토양환경보전법의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본 법률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경우에 오염토양을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및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렵고 지역 내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 각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토양정화업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반입정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안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되 구직활동 이행의무를 부여하여 취업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공시 등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구

축·운영하고, 대한민국명장의 기술전수 노력의 무를 신설하여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며, 품위유지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별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상 교원과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가구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동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직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직지원이라는 용어가 구직촉진수당과 연결되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혜자들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법의 목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취업지원이 창업 및 구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직지원’이 아닌 ‘취업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임이자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임이자 의원안은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김동철 의원님안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연 근로제는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에 근로자의 건강권 훼손과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제한, 차별시정 등의 내용을 동법에서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신설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님 안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구제내용과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신창현 의원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현행 해고예고제의 취지,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의 예측 가능성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에 신보라 의원님 안은 노동조합이 3회 이상 폭력이나 폭괴행위 등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을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기초한 자주적인 단결체이고 현행법이 노동조합의 자유설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이용득 의원님 안 수강명령제도와 구분되는 이수명령을 신설하고 불이행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도입된 수강명령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다만 이수명령의 도입을 전제로 이에 따

르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에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김학용 의원님 안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실질적 지배 기준을 종전의 발행주식 총수와 출자총액 외에 총출연금액, 인사교류 등으로 확대하고 재단법인은 장애인수 모기업 합산을 의무고용인원의 50% 까지 신규고용인원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으며, 모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식 윤광식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106건의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창현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정태옥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기존의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피해의 범위 확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기금 설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추가분담금 부과·징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돈 의원님과 설훈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차량 등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이러한 제한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권리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강효상 의원님 안은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국가는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개발과제 선정 시 전문적인 심사과정이 필요하고 국가계약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일반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신창현 의원님과 강병원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기간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그 입법조치는 공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운행제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관련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부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도 적지 않으므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인다면 대체수단으로서 LNG발전소 등의 가동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요금 부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58항까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 중 임이자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수도부지를 공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강효상 의원님 안은 수도시설 기술진단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의 관리 체계 및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김태년 의원님 안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도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60항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송옥주 의원님 안은 람사르협약 등록습지 및 습지보전도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협약등록습지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이정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라돈을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라돈에 대한 규제가 급격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규제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2항부터 6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임이자 의원님 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규정의 명확성을 보다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상습적으로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처벌 규정의 실효성과 상습범에 대한 형사법 체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문진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기준을 변경하고 시장조성자와 검증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2021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에 대비하여 거래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무상할당 특례업체를 법률에 명시할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전담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환경부장관이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절차, 인허가의제,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주도 폐기물처리 체계하에서 최근 심각해진 방치폐기물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으로서 공공처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 입법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이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범위 등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제93항 및 제94항 김학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 산하기관 간 물관리 기능조정에 따라 상수도 분야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입법취지로 보이나 일부 중복되거나 미흡한 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학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별도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위해서 중인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우만 대체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둔 위원 이번 질의가 예산 관련 질의도 괜찮은……

○위원장 김학용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이상둔 위원 나중에 하나요? 법안?

○위원장 김학용 예, 법안에 관해……

○이상둔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제가 하나 질문 좀……

○위원장 김학용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사실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 하나를……

지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들이 제출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피해자 또 가족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 봤는데 결론부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에 대한 보상·배상 문제를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의 법 체제는 기업이加害者인데 정부가 선보상하고 그다음에 그 보상한 내용을 정부가 기업에 구상권 행사하는 체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신창현 위원 그것을 구체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해서 우리가 좀 더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자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병의 종류를 좀 더 확대하자, 폐뿐만이 아니라 간, 뛰 하여튼 거의 모든 질병이 다, 그게 1차적으로 생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병인지 아니면 2차적으로 기저질환을 악화해서 간접적으로 또 악화된 질병인지까지를 다 포함해서 보상하자, 이런 체제로 우리가 지금 개정안을 다 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원칙으로 갖고 있는 그것도 역시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발상을 전환해서 아예 피해자가 기업에게 직접 보상·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뿐만 아니라 MIT·CMIT까지, SK까지도 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기소돼서? 그러면 일단은 형법상 인과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형법의加害者 인정 책임에 따라서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분명한 보상으로 정부가 중간에서 대행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加害者인 기업에게 직접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 개정안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렇게 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구상권 제도를 가능하다면 이번에는 좀 접고 직접 피해자들이加害者한테 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정부가 그것을 도와주는 이런 절차를 이번에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중간에서 선보상하고 후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요즘 제가 하고 있다는 그 고민을 장관님께서 알아주시길……

○환경부장관 조명래 정부 예산을 집행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꼬리표가 늘 붙어서 따라서 기금을 조성할 때 정부 기여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가 따르지 않는 그런 재원으로 우리가 운용을 한다면 구상권 행사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같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예산의 집행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는 건 어렵다 해서 그동안 구상권 행사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급여하고 계정을 통합해서 운용할 때 그 기금의 성격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마 구상권 행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면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제도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창현 위원 일단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발제만 하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설훈 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요.

○위원장 김학용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한 분 계십니다.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할 것 아닌가?

○위원장 김학용 예, 조금 이따……

○설훈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오늘 법안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9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제187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상정과 의결은 오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가지 쟁점 되는 예산안들이 있어서 점심식사 후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최종 의견 조율을 위원장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내 정리 후 곧바로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제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편하게 말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8.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 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88항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용 이상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오후에 다룰 예결소위 그리고 또 전체회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 예산 중에서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

술 개발사업 예산은 10% 감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 즉 100% 감액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수에 후속사업입니다. 한수예사업단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독자성 평가를 조작하고 최초 개발을 표방하기 위해서 논문을 조작하는 등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만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성' '최초 개발' 같은 말을 내세워서 국회를 기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만한 운영을 했습니다. 1000억 원 예산을 쓰면서도 감독·관리 기관인 기상청은 일체 감독·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부탁할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을 85억 원씩 배정하게 되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한수에 결산 문제가, 범인 해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도 만일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기상청의 리더십, 새 기상청장이 들어오든가 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은 내년 감사원 감사 끝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현재 인력이 다 흩어진다 그는데 한수예 개발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고급 인력은 이미 다른 출연연구소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고 국회를 기망하면서 독자성이니 최초니 하는 말로써 혼혹한 부분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후에 회의하실 때 소위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께서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이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안전심사를 위한 회의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돈 위원** 이정미 위원님 발언하실 것 같은데……

○**이정미 위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위원장 김학용** 이정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상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도 죽지켜봤고 국회가 이 사안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환노위 안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일은 그 일대로 따로 그리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대로 따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심각하다고 여겼던 것이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적되고 하지만 일은 일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적된 일에 대한 어떤 의미나 무게감 이런 것들이, 특히 국회 내에서 국정감사의 무게감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지적된 문제를 제대로 한번 해결을 해 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감사는 해 볼게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예산부터 배정해 놓고 나면 또 그 일에 대한 관성은 관성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 부분들은 일단 다 스톱시켜 놓고 감사를 먼저 철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놓고 다시 판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저희가 아직 예산심사를 마친 것이 아니고요 오후로 예산 의결 과정을 순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두 분 위원님 이 주신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하겠다고 거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소위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수용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플러스 감사원 감사에 따른……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의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 감액 정도는 기상청이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예산 역시 수시배정으로 둑어놓고 감사원 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집행 여부나 적정성을 판단해서 집행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정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이따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소위에서 어느 당이 찬성해 가지고 이게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상돈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내내 이의 제기를 하셨고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노위 전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넘겨 놓은 상태인데,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다시 이따 전체회의 때 하는데 그냥 예산을 감사원 감사 보고 나서 삭감이나 아니면 세울 거냐 정하면 되는 거지 무슨 수시배정입니까, 수시배정은?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원 감사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이 사업을 보류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설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학용** 설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저는 전적으로 이상돈 위원과 이정

미 위원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결과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좋지만 이게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감사원 결과에서 ‘전액 삭감할 것은 아니었다.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되어 적절한 수준에서 삭감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켜 놓는 게 맞는 방향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다시 한번이 사업은 전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미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할 게 아니고 보류를 시켜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하여튼 이 문제는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어차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설훈 위원 예, 오후에 논의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학용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오늘 현안질의를 위하여 4명의 중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중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중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중인을 대표하여 서득현 중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중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득현 중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인 서득현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현안질의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증	인	서	득	현
증	인	송	승	봉
증	인	조	의	서
증	인	요시오카	준이치로	

○위원장 김학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김학용 예,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요시오카 준이치로 대표는 우리말을 잘 압니까, 한국말을?

○위원장 김학용 통역이 있습니다. 통역이 있고요. 오늘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중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박화진 노동정책실장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황 및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드릴 순서는 전체적인 산업 현황이나 계약 현황, 산업재해 현황, 조치사항 그다음에 향후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엘리베이터 산업은 제조·수입, 설치공사, 유지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소관 법률이나 관리 책임은 관계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약 3조 5000억 규모인데 3분의 2 정도가 제조·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조·수입 업체가 부품 포함해서 262개 업체, 설치공사,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대 업체가 신규 설치 시장의 82%, 유지관리 시장의 57%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설치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도급계약 형식이고 유지관리계약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수준인데 각 사마다 그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 공동도급계약 실태 확인된 것은 아래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산업재해 현황입니다.

지난 5년간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사고재해는 총 140건이 발생했고 많은 숫자가 추락사고 그다음에 끼임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중상해 사고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고 사망자는 총 35명이고 설치, 교체, 유지관리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4대 업체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사고사망자가 35명 중에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6명입니다.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그간의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해 왔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실질상의 지위에 따라서 원청 또는 하청으로 그렇게 처벌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다발한 업체나 현장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감독도 실시하고 업체 대상으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티센 크루프에 대해서는 현재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주요 현장 2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 향후 대책입니다.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동도급계약 문제, 계약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원청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특히 내년 1월 16일 날 개정 산업안전법이 시행이 되면 원청이 책임져야 되는 책임 이행 수준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 외에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 요인 또는 안전작업절차에 대한 정보를 설치 업체나 유지보수 업체한테 제공토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함께 사고 사례나 안전작업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작업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계 설치 · 제작업과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에 특화된 시스템비계를 개발해서 클린사업 등을 통해서 소규모 업체에는 보급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안질의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정책실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산하기관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안전정책관이, 국토교통부에서 기술안전정책관과 건설정책과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함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은 복사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현안질의는 국정감사만 끝나면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중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부터 제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반대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시간은 7분으로 하고 필요하신 경우 계속 이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오티스엘리베이터 조익서 사장님과 행안부 조상명 국장 와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김태년 위원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현황 및 대책 보고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설치와 접점 작업에서 노동자 3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사고가 설치공사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작업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35명 중에 11명 정도가 유지관리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산재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의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엘리베이터 제조 대기업과 영세업체가 공동도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영세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장님,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소관부처는 행안부이고요.

이 법에서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법으로 하도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유지관리 책임하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계약을 공동수급 형태로 맺었을 때 그 계약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동등한 계약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도급계약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승강기유지 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자세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운영규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오토스 조의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 28일부터 승강기유지 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조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운영규정에 보면 공동도급계약을 맺더라도 업무대금은 업체 각각에게 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조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이 시행된 3월 28일 이후에 오토스가 체결한 계약서들을 확인해 봤더니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이 보이십니까? 화면이 보이지요?

○증인 조의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한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오토스와 우정엘리베이터가 공동도급한 계약서인데 계약일은 10월 4일이고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오토스입니다.

방금 규정대로 보면, 대금 지급방식을 보면 두 업체의 계좌로 각각 지급이 되어야 맞을 것 아닙니까, 공동도급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증인 조의서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오토스 계좌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스가 대금을 받아 가지고 협력업체한테 주는, 지금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규정에 맞습니까?

○증인 조의서 저희들 민간사업의 계약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저희 공동수급자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서, 서로 동의에 따라서 또 편의를 도모하는 점에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운영규정에 보면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 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토스가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오토스가 받아 가지고 하청업체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것은 규정 위반이에요.

○증인 조의서 위반되는 점이 있다면……

○김태년 위원 조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운영규정 위반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동도급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보받은 내용인데요. 오토스가 빈 계약서에 협력업체들의 도장을 미리 찍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쓴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 사진이 뭐냐면 오토스가 협력업체들로 계약서들을 박스채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 들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은 전부 빈칸이에요. 협력업체는 오토스가 어디와 어떻게 계약을 할지도 모르는 채 도장을 찍어서 오토스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오티스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통보하면 협력업체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의서 사장님, 이 제보 내용이 사실입니까?

○증인 조의서 저희들은 공동수급을 함께 있어서 공동수급……

○김태년 위원 사실이냐고만 물었습니다. 저렇게 빈 계약서, 박스체 하도업체한테 보내고 도장 찍어서 도로 보내라 이렇게 한 게 사실이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증인 조의서 저는 보고받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김태년 위원 사실 아닙니까?

○증인 조의서 상호 협의한, 사전에 합의된 기준 계약, 공동계약서를……

○김태년 위원 아니, 하도급업체한테 빈 계약서 보내고 도장 찍어서 보내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티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뭘 보고를 안 받고 무슨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증인 조의서 표준계약서를……

○김태년 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빈 계약서 보내고 도장 찍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리 봐도 공동수급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실 겁니까?

○증인 조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건데?

○증인 조의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바로 확인 가능하지요? 직원들 와 있지요, 지금? 사장님만 와 계세요?

○증인 조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바로 확인해 주세요.

○증인 조의서 예.

○김태년 위원 또 하나 규정 위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앞서 확인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계약서에 업무 분담 및 대금 분배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업무분담에 따른 계약금액이 오티스가 30%, 우정엘리베이터가 70%인

데요.

조 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승강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50%를 넘으면……

○김태년 위원 50%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김태년 위원 하청업체인 우정엘리베이터가 업무의 70%를 하도급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정 위반이지요, 50%를 넘어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저기 제일 아랫줄에 보면 30, 7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조의서 저희는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공동수급을 하는데 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70%를 하고 있으니까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숙지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정도의 운영규정은 그냥 다 어기고 사업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증인 조의서 말씀을 유념해서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다른 업체들도 사례가 많은데…… 조금만 더 할게요.

현대엘리베이터가 7월에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추가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해서 3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예, 안 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2분 더 드려.

○김태년 위원 이 대금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일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 국장님, 이것도 위반이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엘리베이터 대기업들이 이렇게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과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산재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하도급 위반과 관련해서 처벌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없었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김태년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하도급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이렇게 처벌 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김태년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승강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12월 6일까지 진행 중……

○김태년 위원 12월 6일까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김태년 위원 이번에 실태조사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안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산재사고가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면 억울한 죽음을 여기서 멈추느냐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관련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처벌 내용, 처벌 조치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강력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오토스 사장님, 지금 쭉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이게 전부다 사실이거든요. 이게 다 규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조의서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효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먼저 하셔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건 먼저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할까요?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비슷한 내용은 빨리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오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강효상 위원 하시고 또 하세요.

○한정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안 조금 보고 그다음에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승강기시장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업체 대표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국내 승강기가 7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매년 4만대 신규 설치하는데 이것은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3위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규모는 3조 5000억, 이미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망사고는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작업에서도 12명, 교체작업에서도 12명, 유지관리작업에서도 11명,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험도의 수준 자체가 설치나 교체나 유지관리작업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예전에는 우리가 기계실이 있는 승강기를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한 10년 동안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가 급증합니다. 기계실이 존재하는 것과 기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기계실이 존재할 때는 기계실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서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기계실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타고 내려가거나 영성한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나고 대개는 다 낮은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나게 되면 다 중상 이상, 사망사고로 거의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 설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지보수업무나 설치나 이런 것의 위험도 자체가 급증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도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의 설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도대체 안전 조치를 안 하고 하는 것인가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

니, 여기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티센크루프도 와 계신데 독일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는 저렇게 작업용 별도 비계를 설치합니다. 이게 기계 실 없는……

그다음에 대한민국 오토스는 아니지만 미국의 오토스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작업용 비계, 별도 비계를 만들어서 일종의 기계실 역할을 하게 합니다. 가장 최상단에 저것을 설치해서 저기에서 모든 작업을, 그러면 밑에 걸리는 원치를 통해서 케이지만 안전하게 만들어 주면 케이지 내에서 승강로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작업을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도 저런 작업용 비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설치, 유지보수 또는 교체 작업자들은 왜 저런 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미쓰비시, 오토스, 티센크루프 여기 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저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지요?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작업해서 떨어지건 말건, 하다가 죽건 말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왜 저런 것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려서 본사에다가, 미국에다가, 독일에다가, 일본에다가 배당금을 해 줄 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은 지킬 수 있도록, 죽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정도는 보급을 해 가면서, 그래야 이게 협력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공동수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 이것 사용하고 있는 업체 있습니까, 여기에? 협력업체에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죽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것 하는 데가 있나요, 3사 중에?

오토스,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서득현 티센크루프에서 실제로 현장에 아까 보여 주신 시스템 비계……

○위원장 김학용 일어나서 나와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증인 서득현 몇 년 전에 저희가 시범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파트너사 쪽에서 작업의 절차상 너무 번거롭고 지키기 곤란

하다고 해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한정애 위원 작업의 절차상 번거롭고 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공사 납기기간 자체가 너무 단축되어 있고 그 내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지요.

○증인 서득현 예, 위원님 지적사항……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증인 서득현 예,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다음 것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핀란드에서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라고 만들어진 것인데요.

다음 것으로,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 보시면 이 작업자는 지금 줄에 매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봐 주십시오.

저기 보면 벽면에다가 앵커 볼트 쳐 가지고 거기다가 안전대에 탁 부착해 가지고 작업합니다. 저 작업을 하는 중간에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어도 죽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지요. 그러나 설치를 일단 해 놓고 나면 나머지 작업은 정말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거의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미관상의 이유로 그다음에…… 건설업자나 건물 만드는 데는 미관상의 이유로 또 하나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다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는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기에도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유지보수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가 줄 매 가지고 그 작업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유지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업체 시켜서 하니까, 유지보수업체 시켜서 하니까 그냥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 죽음을 감수하라고, 작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의 본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유럽은 솔직히 말해서 다 본사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까지 같이 세트로 가는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을 더 감수해 가면서 죽음을 감수해 가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국민보다도 2등 국민입니까! 독일 국민보다도 2등 국민입니까! 일본 국민보다도 우리가 2등 국민이에

요! 반성하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398%, 400%나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어떻게 설치하라고, 달랑달랑 그냥 줄 하나에 매달려서 작업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고도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사망하면 우리는 공동수급을 했고 공동수급을 한 이상 당신네 작업자들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면탈하려고만 하시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하세요.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니 겁이 날 정도입니다.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비계 개발 필요성은 이미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저렇게 확장되고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업무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설치 시 안전 확보도 안 되지만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전용 시스템비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더해서, 저런 시스템비계에다가 더해서 작업용 케이지까지 포함해서 세트로만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승강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부작업까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누가 와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지적을 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보면 해외 사례는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용 시스템비계가 독일, 미국, 일본, 핀란드 할 것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이것과 똑같이 하라…… 각각의 나라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게끔 이런 특징이 있는 시스템비계를 개발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특징에 맞게 또는 대한민국 작업자들의 작업 특성에 맞게끔 조금 더 설치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이동이 편하며 또 가벼운 정도의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의 설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단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저희에게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요. 앞으로 진행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지난 10월 15일 국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적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곧바로 엘리베이터 설치 전용 비계의 해외 사례도 같이 검토를 했고 또 4대 엘리베이터 업체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전용 안전 작업대, 안전 비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프로젝트 전체를 본부에서 총괄하고 연구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인증원에서 안전 인증 테스트베드 지원을 해서 상반기에 개발하고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현장에 적용할 한국형 안전 비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그런데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 쓸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현장에는 어떤 방식으로 권고를 하거나 권장을 하셨습니까?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지금 저희들이 현장하고 좀 더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1단계로는 안전 비계를 개발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 또 긴급하게 현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이것을 개발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긴급대책으로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하단에 에어매트를 긴급하게 설치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서 만약에 추락을 하더라도 사망에는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지 또는 최소한 추락 방지망을 다 설치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장이 현장 특수성이 있어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하지 않고 개발하면 현장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금년도 내에도 직접 작업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관계자들하고 같이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개발이 된 시스템비계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정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있는 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그런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정적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안전보건공단이 하고 있는 클린사업이라든지…… 지금 건설현장에도 시스템비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거기에 준해서 빨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까지 같이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행안부 국장님 여기 나와 계시고……

오후 안 하실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용 한정애 위원님 원하면 저는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너무 그러시면 제가 부담이 생겨서……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현안질의니까요. 강효상 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강효상 위원 예, 하고 제가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한정애 위원 행안부 국장님 나와 계신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행안부는 약간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한정애 위원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니 부품에 대한 인증도 하고 부품에 대한 설계 규격을 만들고 인증을 받게 해서 그게 설치되게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완성 검사, 설치 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때의 위험을 통해서 일반 국민, 시민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 놓치신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앞으로 유지보수 업무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안 하셨고 유지보수 업무를 하게 되는 실질적인 작업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약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약은 행안부도 행안부이지만 공정위도 여기에 나와 계시고 또 국토부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국토부 국장님 잠깐, 다 서게 하기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노동부의 판단은 공동수급을 했든 뭘 어떻게 했든 실질적으로 원·하도급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법을 가지고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일단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보시면 말은 공동수급인데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제작사는 아주 고층빌딩, 정말로 고층의 속도가 아주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직접적으로 설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설치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그 설치업체와의 관계가 불공정한 거래 계약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인데 국토부가 예를 들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공동수급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면 그냥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해 주신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설치공사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치공사 건을 제가 좀 보여 드리면 멀미가 날 정도인데요. 여기 나와 계신 업체 중에 한 군데 인데 제가 일부러 어떤 엘리베이터사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는데요.

이게 A엘리베이터사가 모 건설회사하고 체결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계약입니다. 전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742억짜리, 아주 큰 공사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엘리베이터사가 28개 업체를 구성원으로 해서 공동수급체를 꾸린다고 하고 원 건설사에다가 저

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약정을 맺지요, 이게 5월 30일입니다.

그다음 것 볼까요?

5월 31일 날 다시 35개로 7개사가 추가가 됩니다. 협정서가 다시, 추가약정서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8개사를 삭제하고 27개사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2차 변경을 합니다. 두 달 지나서 10월 25일 날 다시 3개사를 삭제하고 1개사를 추가해서 총 25개 업체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저는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오티스의 경우에는 백지계약서를, 아예 백지를 주고 거기에는 도장을 찍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걸로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는데, 티센의 경우에는 인감하고 고무인을 아예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티센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그냥 찍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다른 업체라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똑 같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찍어서 내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고무인과 인감을 가지고 있고 찍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약정서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가능한 거지요. 이게 공동수급입니까, 국장님?

나도 모르는, 내가 도대체 수급업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이게 건설법에서 정하는 공동수급 맞습니까?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구현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불법 하도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 6월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 번에 걸쳐서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말소하고 한 번만 해도 일단 하도급 참여를 제한, 6개월까지……

○한정애 위원 그 등록말소가 설치업체입니까, 아니면 제작사업입니까?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구현상 기본적으로 제작업체들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단 공동 범위가……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설치를 안 하니까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구현상 그렇지요. 만약에 등록말소가 되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그 등록말소라고 하는 게 지금은 광역단체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구현상 예.

○한정애 위원 행안부도 마찬가지지요? 유지보수도 광역단체별로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한정애 위원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하나,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여기 등록말소되는 거고 나머지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나머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되는 도에서 또 등록말소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구현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 다 합쳐서, 어느 한 군데가 전체적으로 취합돼 가지고 세 번이 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개별 광역단체에서 서울에서 한 번, 경기에서 한 번, 인천에서 한 번, 세 번 이러면 전체가 등록말소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구현상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조상명 예.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록에 남습니다.

다음 것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공동수급에 대한 실질적으로 불법하도급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나머지는……

두 분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윤수현 예.

○한정애 위원 하도급 거래나 이런 것들은 일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있으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뜻인데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 관련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정업체가 양중업체하고 맺은 하도급계약, 저희가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제 기

예에 현대엘리베이터였나요, 오토스였나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양중업체하고 맺은 하도급계약에서 양중업체와 연 단위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양중이 다 끝난 다음 두 달 뒤에, 두 달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양중과 관련된 계약금액을 주고 실제로 만약에 그 양중과 관련된 기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으로 이행부담금 같은 자체보상금을 30분의 1씩 납부를 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불공정행위를 담은 거래계약서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사와 양중을 하든 유지보수를 하건 설치를 하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불공정계약 행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계약 행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약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지도해 주시고 지도를 통해서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이런 업체들이 부당한 거래행위에 노출되지 않고 자기 설치를 하는 또는 양중을 하는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베이터사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서의 관행들과 계약서의 내용들을 살펴주시고 이 내용들을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윤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와 나중에 시정을 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사본들을 확보하고 그 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기준에 만들어져 있는 하도급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에 준해서 그것을 지도해 준다고 하면 오래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중에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윤수현 11월 까지 제가……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최대한……

○한정애 위원 정기국회 내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 윤수현 최대한 11월 중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정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다른 협약은 오후에 하고요.

우선 고용노동부장관님, 한정애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의 구체적인 사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지난 5년간 엘리베이터 설치, 교체, 유지관리 작업과 관련해서 사고 재해자가 총 140명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사고사망자가 35명입니다. 작업 형태별로는 설치작업 12명, 교체작업 12명, 유지관리 작업에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사망 사고 35명 중에 추락사가 20명, 협착사가 14명, 감전이 한 분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보면, 첫째 신축 건설현장은 공사를 위해 별도의 공사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공기단축 요청과 건설현장의 편리를 위해서 승객용 승강기를 미리 설치하고 이를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빈발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강효상 위원 두 번째는 공기단축 경쟁이 제조사 입찰경쟁의 주요 도구화가 되다보니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자들은 관례화되어 있는 건설사들의 약 45일 내지 60일의 공기단축을 맞추려고 야간 심야작업에 공휴일도 없이 심지어 명절이나 주말 근무도 하다 보니 노동시간 과다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특성상 추락사고나 협착사고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고위험 직군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공사용 리프트화함으로써 소비자 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부품이 오염되거나 파손, 기계적 변형이 유발되어 입주 초기에 고장다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고장은 입주자 피해로 이어져 119구조 건수만 연간 2만 건이나 됩니다. 결국

이는 엘리베이터 신뢰도 하락과 여러 가지 신인도 추락으로 연결되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런 원인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본 적도 있고 지적에 대해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과정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장관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단축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물론 승강기안전관리법이나 관련법을 고쳐야 하겠지만 이런 사용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기 단축 요구를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별 표준공기도 도입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법을 보완해서 산업별 고위험직군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하도록 계약이나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 또는 이런 불법적인 사항을 요구할 때는 처벌하는 처벌조항도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주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현장 재해율 감소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원인인 계약행태라든지 원도급자의 공기단축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신 현안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악한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

지 제안사항들도 함께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하여튼 심각한 고위험직군의 사고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선진국…… 중진국만 해도 이런 사고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건설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타워크레인도 사고가 나면 보통 대형사고가 나고 대부분 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국토부로도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조율을 해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지장치를 만들어서 실제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한정애 위원 승강기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도 많이 설치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보수 업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확인을 하셨겠지만 장관님, 이게 부처별로 다 업무가 파편처럼 파편화되어 있어서 각자가 이것은 우리 게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든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면 그때 정리해야지 그렇게 하는 동안 죽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습니다. 지금 계약의 구조 상태가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면서도 다른 나라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작업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만 공사기간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냥 안전하게 작업을 하나 보다, 좀 더 강하게 감독하고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준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노동부도?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시스템비계 만들어도 저는 다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까지는 안 가는 거지요. 죽음으로까지는 안 가고 살아서 돌아서 퇴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4사를 오셨는데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으면 그 증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확보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매출 내고 그 많은 배당들을 다 본국에다가 내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더 월급을 올려 줄까 이런 것 고민하기 전에 실제 협력업체라고 하는, 도장 내놓을 수밖에 없고 백지계약서에다가 그냥 찍어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고용현황이나 그 사람들의 상태는 한번쯤은, 배당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들과 나누려고 하는 고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고민하십시오. 네 분 사장님들 고민하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현안질의하겠다고 했을 때 각각의 기업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그때 숙제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최소한 저분들 가시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나 약속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준비한 게 다른 위원님도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오후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또 중요한 일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도 대개 이제까지 나온 것과 유사한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미진에서 오는 현안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3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갔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의식이 그렇지 않아도 뒤떨어지는데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재현되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계기로 해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오늘과 또 내일로다가 안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오늘 뜻 깊은 현안질의가 되

기를 위원장으로서 소망하고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이것이나 스스로도 모르게 대한민국의 타성에 젖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다행스러운 것은 관계 부서에서 오늘 다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팀을 구성을 해서 최소한도 금년 가기 전에는 완벽하게 엘리베이터의 안전과 관련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갑 장관님께서 중심을 잡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만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고 나머지 세 기업들은 소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쭉 전반적인 말씀을 들었으니까 엘리베이터 각 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각오나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득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대표이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득현 한정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정말 진심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고 이후에 저희가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고 난 내용이 비계 작업 과정에서 났기 때문에 파트너사하고 다시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비슷한 경우에 추락을 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기로 했고 또 비계가 승강로 안으로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지 브라켓 그리고 안전하게 발판을 구성을 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개선을 했고요.

또 지적하신 여러 가지 계약서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 가지, 자체상금 부분, 지불조건 부분 그리고 일종의 부당한 내용이 있는 부분은 즉시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10월 24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현장의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을 하고, 위험의 외주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저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 위험에 처하지 않

도록, 파트너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전국 현장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관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성실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서 법 저촉이 없도록 열심히 분발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계·양중 파트너사 또 설치공사 파트너사, 유지·보수 파트너사와 각각 저희가 상생 협력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미 두세 차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현안들을 바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정부 부처의 지도를 받아서 훨씬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승봉 먼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동종업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렬하게 지적해 주신 것 깊이 새겨서 한국의 토종 기업으로서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안전한 작업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매진의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요시오카 준이치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대표이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통역분은 이쪽에 나오셔서 이쪽 걸로다가…… 아,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시면 그 바로 옆에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요시오카 준이치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의 대표이사 요시오카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행정 각처에서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엘리베이터 이용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설치 작업 그리고 유지·보수 작업을 하시는 공동수급업체 직원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3월에 인천에 새롭게 공장을 신설을 했

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부지 안에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설도 구축을 해서 앞으로는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면서 안전을 조금 더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익서 오텋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익서 오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또 관련 부처에서 여러 가지 저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질책과 또 개선방안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또 그런 내용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전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정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협력업체들에게 저희들이 표준비계를 마련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련된 훈련들을 같이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급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편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노력 덕분에 지난 5년 동안 저희 회사와 저희 협력업체, 모든 저희 현장에서 단 1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진하고 더욱 노력해서 안전한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는지 돌아가서 철저히 점검해보고 업계 전체가 더욱 안전하고 또 상생협력하고 공정하고, 공사 현장도 그런 생태계에서 잘 발전하도록 저희들도 헌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늘 특별히 날을 잡아서 현안질의를 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앞으로 현재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이러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를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은 예산과 또 기타

현안논의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LT)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동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동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19년 10월 30일, 31일 및 11월 4일, 5일, 7일, 다섯 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조 337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7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서 2543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230억 원,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은 투자조업 결성 및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안의 10%인 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비점저감기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높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여 27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2019년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도 예산안의 10%인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252억 7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4703억 5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911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야생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차단울타리 설치 및 시료채취, 폐사체처리비로 9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1798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3만t의 처리비용 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사업의 국고보조율 개편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95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210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3개의 기금에서 97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5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최근 중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5000명분에 해당하는 65억 400만 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2019년 집행실적이 크게 저조하여 과도한 사업규모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34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자건강보호 사업의 내역사업인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사업은 올해마스크 지원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을 고려하여 47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동료지원기본운영비 단가인상에 6억 원, 슈퍼바이저사업 신설에 3억 7500만 원,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에 10억 원 등 총 2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기숙사 개보수, 사용연한이 오래된 통학버스 교체, 정규직으로 전환된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위해 13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출퇴근재해의 적용례와 관련한 현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급적용기간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3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등 실효적인 중장년층 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3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직업안정기관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일자리위원회운영 등의 사업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존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계로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보류된 것은 보류된 대로 전체회의에서 결정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62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사업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규정한 후에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정부예산안의 10%인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금번 국정감사에서 선행 사업인 한수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고 소위 위원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예산의 전액 삭감방안 등을 포함하여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사업에서 지역 및 국가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제주공항 공항기상레이더 구축을 위한 환경조사와 실시설계, 장비조달 수수료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약금 14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여야 간에 첨예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동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도 오셨기 때문에 혹시 현안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서 없이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예.

○임이자 위원 일단 환경부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상청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한수에 후속사업 관련되어서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위원장 김학용 제가 그건 이따가……

○임이자 위원 그건 먼저 해서 보내 드리고 노동만 남겨 놓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김학용 아니, 그런데 또 혹시 기상청에 물어볼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시고 서……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KBS의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소위 진미위라는 회사 기구가 기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차별적인, 보복적인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 기억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 이후에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가 KBS의 소위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 위원회의 징계조치는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한이 없는 이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하는 직원의 징계는 위법하기 때문에 이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판단을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 내용을……

○강효상 위원 남부지법 51부 판결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국감에서 계속 하루 종일 지적을 한 사안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아무런, 야당 국회의원의 호소에 너무 눈을 감고 계십니다. 듣기 싫으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지 않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난 국감에서 종인으로 출석한 오성일 KBS 인력관리실장은 KBS 진미위의 활동이 정당했고 인사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들은 어떤 소속 노조인지 상관없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평하게 인사를 하고 있

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의 이런 판결 존중해서 고용노동부가 제가 촉구한 특별근로감독 현장점검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성일 실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위반으로 환노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왜 인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결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KBS 내 민주노총과 비민주노총 조합원에 관한 차별적 인력 관리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급 보직자에 민주노총 출신이 59%를 차지했고 비민주노총 노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아래에 부장급 보직자의 84%가 민주노총 소속이고 KBS 비민주노총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민주노총 KBS 노동조합원은 이 중에 상당수가 보직해임되거나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이 정부 들어서 국장급 보직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의성 없는 인사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정말 특기할 만한, 정말 가공스러운 일은 KBS에 13개 뉴스가 있는데요. 진행자들이 모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입니다. 왜 이렇게 민주노총 조합원이냐, 앵커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앵커를 선발하는데 전부 민주노총 조합원 소속입니다.

지난해 4월 민노총 소속 간부와 민노총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를 심사위원회으로 하는 앵커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비민주노총 조합원은 극단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 규정상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뉴스앵커 선발심사위원회 6명 전원이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간부 3명과 비상대책위 3명.

이러니까 13개 뉴스 전원이 민노총 앵커로만 선발이 되고 이렇게 KBS의 편파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코즈 앤드 이펙트(cause and effect) 아닙니까? 이게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편파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민주노총 출신 기자는 비보도 부서나 강제 인사 조치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이 되고 징계를 받고 극단적인 해고까지 당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81조에 해당돼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계속 KBS에서는 이런 비민주노총 소속 직원과 기자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제가 KBS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니까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까지 위법 판정,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부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근로자는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좌파 근로자가 있고 우파 근로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정부가 보호를 안 한다면……

○위원장 김학용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정부가 보호를 안 한다면 이것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선진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장관님 스스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금 방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 번 더 KBS 노사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원 판결은 저희가 민사소송이라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가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게 일단 위법이어서 징계는 중단됐고요. 그러나 그 원인, 과정과 전반적인 것을 노동부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사측에 강력히 워닝을 주셔서 더 이상 이런 보복적인 인사 조치는 중단해야 된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장관님이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노조 인사 문제 심각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차관하고 같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장관님의 견해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 말입니다. 이것 당시에 최저임금을 16.4% 2017년에 인상하면서 최저임금 심의할 때 최저임금 위원들한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최저임금 위원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 할 테니까 좀 많이 올려 달라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이 자금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은 국민의 피와 땀과 같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사업주를 돋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주를 돋는 예산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김동철 위원 세상에 국민 세금 갖다가, 어쨌든 물론 어려운 사업주들이기는 하지만 기업인들이 줘야 될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돋는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러나 정부가 급격하게 인상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국회까지 이 부작용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국회에서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사업을 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당시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겠다, 1년만 해 보고 하지 않겠다고 한 사업이에요. 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면 3년째잖아요. 그러면 내후년에도 없어지느냐, 내후년도 장담을 못 해요.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국민 세

금을 이런 데다가 평평 쓰면서 말이지요.

거기다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EITC 같은 것으로 보완하라고 해서 EITC 예산이 거의 4조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해야지요.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르게 정부가 잘못 해 가지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언제 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것 법적 근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예타 실시 안 했지요? 정부는 이것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원래 근간이 취업성공패키지를 개편한 사업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법적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포괄적인 근거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있는 포괄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사업을 해 온 것을 개편하는 것이고, 그 개편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법 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헌법 근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명백한 근거 없이 그렇게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면 됩니까? 이것 지금 실업부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무슨 원론적인 근거 가지고서 그렇게 막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예타도 하지 않고 수천억,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단위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2700억이니까. 이런 일이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부조 저는 도입하는 것 궁극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 개혁과 함께 대타협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끗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 가지고 하게 되면 앞으로 노동 개혁 무슨 양보를 받아 낼 수 있겠습니까? 노동 개혁 출 것이다 줘 버리고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여튼 예타는 그렇다치고 지금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 법이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법이 통과하고 그때 가서 예비비로 하는 게 정당한 법집행 아닙니까? 예산집행 아니에요?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법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 정부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의결하는 이 마당에 법은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나중에라도 법이 통과됐을 때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실 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의결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시면 법안심의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또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회의 가면 법안과 예산은 같이 의결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법안이라는 게 정부안대로 통과될지 어떻게 수정이 될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자리위원회 말입니다. 이것도 금년까지 한 50억 내년에 56억인데 장관님 생각하실 때 청와대 일자리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이것 고용노동부가 하면 될 일이잖아요.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한 적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옥상옥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일만 불편하게, 고용노동부 오히려 일 방해하고 있지. 그러면서 50억, 60억씩 이렇게 흥청망청 써 대는 것 이것 이대로 놔둘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일자리위원회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습니

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광주형 일자리 타결되니까 나중에 군산형, 군산형 일자리는 좀 나중에 됐지만 울산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밀양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전부 자동차예요, 자동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겠어요, 이것? 전부 청와대가 말이지 일자리 정부라고 표방해 놓으니까 하나 광주형 일자리 성공하니까 그냥 막…… 광주형 일자리 5년 걸렸는데 말이지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6개, 7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되지도 않아요, 이것.

그런데 그런 일 했다는 것, 일자리위원회가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 좀 내세요, 목소리 좀. 청와대하고 다툴 것은 다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장관님이 곤란한 것은 잘 답변 안 하시는 그런 경향이 요새 생기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닙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신 것 중의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저희도 이것은 한시 사업으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에도 지난 2년간에 최저임금 인상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아직 영향이 남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편성한 것이고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18년도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이것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출구전략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내년에, 내후년에 그만둘 것인가라고 그렇게 확답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이야기 할게요.

○위원장 김학용 예, 그러시지요.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왜 제 할 일을 못 해 놓고서 계속 이런 악역만 덤터기 하냐 이거예요. 최저임금 인상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을 발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청와대하고 어디서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안 된다고 막았어야지요. 그때 못 막아 놓고 말이지요, 2017년에 못 막아 놓고 지금 와서 모든 악역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신보라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제 종교를 넘어서 각 정당에까지 퍼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처음에는 그래요, 이 정권이 들어와서 최저임금 많은 공약을 내걸고 하겠다고 해서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 올려놓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뒤에서 따로 불러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 따로 야합해서 만들어 낸 게 일자리안정자금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김동연 부총리 뭐라 했습니까? 한 2년 하고 그만둔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EITC로 보완하고 2년만 하고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 죄짓는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 일자리안정자금도 인사이드 정책이에요.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4대 보험 내고 나면, 4대 보험 다 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크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바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차라리…… 지금 얼마입니까? 2018년도 2조 5000억 정도 넘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2019년도 지금 얼마입니까? 2조 8000억 정도 우리가 예산 세워 놨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또 2020년도에 얼마예요? 2조 1600억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차라리……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했지요? 그렇게 대답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홍남기 부총리도 예결위에서 이것은 계속 페이드아웃시키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페이드아웃인데 그게 2020년도까지는 가겠다라고 답변했잖아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7조가 넘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7조가 넘는 돈, 2020년도까지 간다고 보더라도 10조 원에 육박할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100만이 넘는 실업자, 아웃사이드에 있는 실업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입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인사이드 정책만 편기 때문에 그래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인사이드 정책이고요, 최저임금 인상도 인사이드 정책이고요. 아웃사이드 정책은 언제 펼 겁니까? 저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해서 이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다 옥상옥으로 둘 것이 아니고 차라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요 이와 관련돼서도, 물론 취성패 1·2 같이 섞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거기에다가 취약계층에 구직촉진 수당까지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서로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루뭉술하게 하게 된다면 고용정책 기본법

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안 될 리 없지요?

그러나 우리 취약계층 실업부조 관련되어 가지고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상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지 이것을……

아까 장관님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어차피 정기국회니까 국회에서 정부 법안 통과시키줄 것 아닙니까?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그런데 입법하고 예산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선례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하나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서……

○임이자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산 통과시키면서 부대 결의를 다셔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참 답답하시네요. 엄연히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상황 상황이 다르지요. 시대 시대 다르고 상황 상황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지요.

여야가 지금 분위기가 좋고 여야가 지금 화기애애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보셨지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한테 하는 행동 이런 것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화기애애하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국회가 입법을 해 줘야만 되는 부분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장관님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때문에라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선 먼저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고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업부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비비로 하셔도 됩니다.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난 후에 예비비로 집행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업부조 관련된 금액만큼은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취약계층과 취성패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그러면 세워 달라면 좋습니다. 그것은 세운다

하더라도 실업부조 관련되어 가지고는 일단은 법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통과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교육부 사례도 하나 있는데요, 교육위원회 사례도 있는데 지난번 고교 무상교육 사업의 경우에 20년 시행 목표로 해서 정부 예산안이 먼저 편성이 됐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장관님! 장관님, 그것은 국회가 해 줬을 때 문제지요, 해 줬을 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래서 저는……

○임이자 위원 국회가 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해 줬을 때 문제인 거고 지금은 국회가…… 지금 환노위 소위원장이 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결정은 국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도 있고……

○임이자 위원 아니, 소위원장이 저인데 왜 장관님이 그것을 갖다가 통과시킨다고 지금 예단하십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제가 통과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정기국회 때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고 법안과 예산을 같이 제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좀 전에 장관님의 말씀은, 태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해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비춰졌고 그것은 염연히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법이 먼저 통과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삭감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봤더니 좀 절차도 무시되고 좀 관례도 무시되고 법도 좀 무시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구직활동지원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것 예타조사 받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 당시에 예타 받았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아까 말씀하실 때 취성폐의 일부를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면제……

○신보라 위원 예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직활동지원금도 취성폐의 일부를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인데 예타조사 받으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예타 면제 결정된, 받은 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타조사 대상 사업이 돼서 조사에 올라서 그래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면제를 받은 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예타조사 대상 사업 자체로도 선정을 안 하고 예타,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 대상에 아예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려야지요. 올려서 국무회의 의결 받으셔야지요.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하고 이 예타 문제와 관련해서 상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 판단은 이것은 기존 취성폐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통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예타 받을 사업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동안의 절차나 아니면 관행이 무시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의 구직활동지원금도 어쨌든 새롭게 생긴 사업 유형이에요.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그게 취성폐 일부 사업을 이 세부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라고 했지만 이것도 예타를 받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계속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얘기했지만 똑같이 예타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글쎄, 그런데 저희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판단했더라도 구직활동지원금도 취성폐 일부 사업을 편성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예타조사 받으셨

어요.

○한정애 위원 예타 면제를 받았지요.

○신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타조사 대상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아서 면제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러니까 면제받는 것으로……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새로 사업을 신설할 때는, 신설 사업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도 그 절차를 밟으셔야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타조사 면제를 받건 안 받건 그것은 국무 회의 의결을 받으셔서 그 절차까지를 밟고 이 법안을 제출하거나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절차를 우선 지금 생략하신 것 때문에 김동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들이 절차가 무시됐고 그동안에 관행도 무시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지금 9월에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9월에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것을 모두 다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총선으로, 총선 공약으로 여당에서 심판받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이 선호해서 다수당 되시면 이것 내년에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통과를 전제로 반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것은 총선 대비용 사업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사업이고 거기에……

○신보라 위원 선거 공약으로 나왔으면 그해에 바로 입안하시지 그려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때부터 입안을 쭉 준비를 해 가지고 이번 금년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왜 9월이냐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법안심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야의 이견이 지금 분명하고 법안 통

과를 전제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사노위에서 노사 합의하는 그런 절차까지 거치다 보니까 시기가 좀 지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 관례, 법 이런 것들이 무시된 상황에서 이것을 환노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위원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좀 들어가 봤어요. 일자리위원회 공지사항이 언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최신 공지사항이 언제 올라오고 안 올라온 지 아십니까? 2019년 8월 20일이에요. 공지사항도 내용도 볼까요?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일자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 ‘일자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 이런 게 일자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근데……

○신보라 위원 일자리대책 발표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신보라 위원 일자리대책 큰 통으로 발표하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많이 발표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자의 주무부처 장관 고용노동부장관님이시고요. 도대체 일자리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우선 정부 전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위원회는 정부부처로만……

○신보라 위원 그런데 정부 전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원들도 들어있는데 그 민간위원들 안에 노사단체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건 또 노사정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글쎄, 그런데 경사노위하고는……

○신보라 위원 경사노위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사노위하고는 조금

역할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 그리고 어쨌든 일자리대책은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위원회는 보니까, 공지사항만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벤트 열고 있고 정책 연구용역 하고 있고, 그것 노동부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래서 나름……

○**신보라 위원** 저는 계속된 중복된 일 그리고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에 더 이상 정부예산을 방만하게 쓰셔야 되겠느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이것은 삽감하고 고용노동부가 일 다 가져가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일자리위원회는 민간위원도 들어있고 그 민간위원 안에는 노사단체도 들어와 있고 노사단체 중에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경사노위는 안 들어와 있지만 일자리위원회는 또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비정규직 통계 같은 것을 우리가 좀 긴 시각을 가지고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해 가야 될 때 노동계하고 의견수렴이 굉장히 필요한데……

○**신보라 위원** 아니, 그건 노동부나 노동연구원이나 그다음에 고용정보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일자리위원회에서 금년에 그런 비정규직 통계를 어떻게 개선한다라는 것을 양대 노총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안에 여러 그런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운영하는 소위원회도 민주노총 관계자들 다 들어가 계세요. 경사노위에만 참여 안 할 뿐이지. 그런 기구들로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현안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은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오늘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못 모아서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그리고 노동

부장·차관님 그리고 3당 간사님께서 조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 전에는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 중에서 소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온 내용 중에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결정한 내용을 심사보고한 내용에 추가를 해서 오늘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형태의 한수예가 해산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사업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규정한 후에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60억을 감액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마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기상청장님,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증액 부분은 동의하는데 감액 부분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걱정하지 마세요. 감액 부분은 기상청장님이 동의하고 안 하고 간에……

○**김태년 위원** 감액 부분은 청장님께서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청장님 권한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거예요.

○**기상청장 김종석** 증액 부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정부 측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환경부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대한 각 소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 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활동기간 중에 각 사업별 예산 안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동철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최대한의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이 국민환경권 보장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

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활동기간 중에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동철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개발 등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게 받아들이며 지속적인 업무 개선과 예보 정확도 향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신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두 장관님들, 기상청장 나와 계시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간단하게만……

○위원장 김학용 이장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노동부장관님 인식에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합니다.

관련 근거법이 없는데 예산편성해서 법안이 잘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하는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측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여기 국회의 뜻이에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그것 예측해서 편성합니까? 법안을 먼저 마련해 놓고, 근거법을 마련해 놓고 예산 하는 것이지.

저는 현 정부의 인식이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임 정부, 전 정부는 다 적폐로 물고 현 정부는 그것보다 수배나 많은 적폐를 양산하면서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저는 장관님의 그 인식이 아주 잘못됐고, 위원장님 고용노동부 이 문제는요 관련 법 있기 전에 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국회의 어떤 권능을 우리 스스로 무너트리는 일이고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관님 절대로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을 마련하고 근거법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고용환경이 최악의 상황인데 장관님이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 문제하고 노동 문제 책임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재량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청와대 지시받아 가지고, 감액하는데 절대로 받지 말라고 지시받았는지 그냥 고용부차관 눈만 껌벅껌벅 하고 계셨어요.

소신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장관 하셨는데 뭘 더 원하십니까? 소신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장관직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장관님이 할 역할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야당 위원님들 충분하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사실관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9대 국회에서 처음에 취성패 사업을, 2009년인가 실시를 하고 그 뒤에 19대 국회에서 취성패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었길래 그것과 관련한 근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이백 억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1000억대 단위로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가 들었던 답이 그거였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가의 역할이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1000억대씩이 예산이 늘었고 추경을 할 때마다, 특히 취성패 사업은 추경으로 꼭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논의할 때에도 위원님들 중에 몇 분들은 현재 시행령으로도 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령을 고쳐라, 시행령을 고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것까지를 포함해라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미 구직활동수당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취성패

라 그래서 벌써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보들 중에 몇몇 분들이 다 실업부조 제도를 대한민국이 이제 도입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실업부조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 건 바가 있고 실제 야당 위원님들 중에 이 중에 몇 분은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그 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야당 위원님들까지 그 제도를 도입하자고 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취성패 사업과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고 하니 법적으로 근거를 아예 만드는 것이 시스템을 구비하는 데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냥 실업부조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의 수준을 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청년을 비롯해서 또는 지금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새롭게 구직활동을 나서야 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그냥 취성패와 구직활동수당 이렇게 해서 했으면 위원님들이 아마 그냥 통과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관리할 것 조금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상반기는 기존에 하던 사업대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법이 개정될 것을, 야당 위원님들도 법을 내놓으셨으니까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하반기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게 총선을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혹시나 정말로 무슨 총선 공약이…… 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해 주는 게 총선 공약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하는데……

○임이자 위원 제가 들어오니까 긴장되시는군요.

○한정애 위원 위원님 내놓으신 실업부조 관

련한 법안 얘기했습니다.

논의를 하는데 얼마나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우리가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한 간사님의 출중한 능력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대강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끄러운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한 게 아니고 오늘 논의되는 것도 잘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안 좋은 선례를 언제 끊어 낼 수 있나 이런 것이 문제지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어떤 게 옳은지는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6살에 국회에 비서관으로 왔을 때부터 31년째 이런 일들을 정권마다 끊지 못하고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 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강효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면 질의?

○강효상 위원 아니, 딱 1분이면 됩니다.

○설훈 위원 그냥 끝내지요. 또 하려고 그러면 나도 또 한다고. 나도 해야 돼.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해요.

○강효상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저 얘기 아닙니다. 딴 얘기예요.

○위원장 김학용 그러세요. 그러면 진짜 1분이세요?

○강효상 위원 예.

○위원장 김학용 믿어 보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제가 운영위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너무 호화 사무실에 인건비·시설비가 예비비로 16억이나 들어가고 계속하는데, 그 사무실 평수가 24평이에요. 대통령 집무실보다 더 넓어요. 장관님은 한 10평인가 12평인가 그러시지요? 그 기후환경회의 예산,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 하지만 예산이 환경부를 통해 나가는 만큼 그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잘 감시를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 집 살림처럼 하면 아마도 훨씬 더 국가 살림이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유념해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질의와.....

○설훈 위원 저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예, 설훈 위원님 서면질의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효상	김동철	김태년	김학용
문진국	설훈	송옥주	신보라
신창현	이상돈	이용득	이장우
이정미	임이자	전현희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	윤광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박광석
자연환경정책실장	송형근
생활환경정책실장	유제철
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	박미자
수자원정책국장	박하준

대변인	김동진
감사관	김영석
정책기획관	주대영
자연보전정책관	이호중
자원순환정책관	이영기
환경경제정책관	김동구
대기환경정책관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	황석태
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기상청	
청장	김종석
기획조정관	신도식
예보국장	전준모
관측기반국장	나득균
기후과학국장	김남욱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금란
지진화산국장	장동언
수치모델링센터장직무대리	강현석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단장	홍정기
조사·평가지원관	박용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국립생태원장	박용목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서민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기획조정실장	김경선
고용정책실장	나돈진
노동정책실장	박화석
통합고용정책국장	송홍철
직업능력정책국장	장신철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대변인	김덕호
노동시장정책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정한
고용지원정책관	김효순
노사협력정책관	김민석
근로기준정책관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	권기섭
공공노사정책관	이현수
청년고용정책관	박종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보고사항】**○의안 회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최연혜 · 송희경 · 이종배 · 이채익 · 정갑윤 · 이명수 · 박성중 · 문진국 · 백승주 · 김도읍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문진국 · 박맹우 · 김선동 · 정진석 · 이철규 · 경대수 · 정갑윤 · 김석기 · 이용득 · 김학용 · 장석춘 · 박명재 · 김현아 · 정운천 · 이종명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임이자 · 김수민 · 문진국 · 박인숙 · 유민봉 · 김승희 · 이양수 · 김규환 · 신보라 · 박명재 의원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전현희 · 강병원 · 유동수 · 김병기 · 제윤경 · 신창현 · 강훈식 · 노웅래 · 이용득 · 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9일 회부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서영교 · 윤일규 · 맹성규 · 조승래 · 서형수 · 정재호 · 윤준호 · 박완주 · 서삼석 · 김경협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강효상 · 한선교 · 문진국 · 신보라 · 김동철 · 송옥주 · 이용득 · 임이자 · 윤한홍 · 이양수 · 송희경 · 김규환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이정미 · 추혜선 · 여영국 · 윤소하 · 심상정 · 김종대 · 민홍철 · 김종훈 · 이용주 · 손혜원 의원 발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박찬대 · 장정숙 · 서영교 · 맹성규 · 유동수 · 임재훈 · 표창원 · 홍의락 · 윤관석 · 정춘숙 · 박홍근 · 송영길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한정애 · 박정 · 송옥주 · 정성호 ·

김정호 · 김경협 · 홍익표 · 서형수 · 권미혁 ·
진선미 · 홍영표 · 박경미 의원 발의)
이상 5건 10월 30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30. 신창현 · 서영교 · 서삼석 · 어기구 ·
윤일규 · 전재수 · 백혜련 · 조웅천 · 박정 ·
서형수 · 박홍근 · 노옹래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30. 이용득 · 송옥주 · 전현희 · 김태년 ·
송기현 · 신창현 · 송영길 · 문진국 · 설훈 ·
김현권 · 한정애 의원 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이춘석 · 이학영 · 원혜영 · 기동민 ·
박지원 · 김두관 · 최재성 · 안민석 · 백혜련 ·
금태섭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이종결 · 안민석 · 최재성 · 송영길 ·
윤일규 · 이상민 · 유승희 · 유성엽 · 김병욱 ·
전재수 · 민홍철 · 김병관 · 강병원 · 김경진 ·
황주홍 의원 발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30. 이춘석 · 이학영 · 원혜영 · 기동민 ·
박지원 · 김두관 · 최재성 · 안민석 · 백혜련 ·
금태섭 의원 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이춘석 · 이학영 · 원혜영 · 기동민 ·
박지원 · 김두관 · 최재성 · 안민석 · 백혜련 ·
금태섭 의원 발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이춘석 · 이학영 · 원혜영 · 기동민 ·
박지원 · 김두관 · 최재성 · 안민석 · 백혜련 ·
금태섭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30. 김동철 · 장정숙 · 임재훈 · 박주선 ·
장병완 · 하태경 · 정병국 · 신용현 · 정인화 ·
임이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발의)

(2019. 10. 30. 백혜련 · 강훈식 · 진선미 · 정은혜 ·
김철민 · 김병욱 · 정성호 · 김영진 · 남인순 ·
금태섭 · 노옹래 · 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9건 10월 31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10. 31. 신창현 · 표창원 · 김병기 · 송옥주 ·
박정 · 조웅천 · 김종민 · 김경협 · 서영교 ·
김철민 · 조정식 · 서삼석 · 김성수 · 김상희 ·
노옹래 · 김영호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한정애 · 신창현 · 변재일 · 정은혜 ·
강훈식 · 윤일규 · 유승희 · 강병원 · 김정호 ·
안규백 · 남인순 · 박정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송옥주 · 박정 · 노옹래 · 변재일 ·
신창현 · 한정애 · 김경협 · 조웅천 · 이용득 ·
정세균 · 김철민 · 정은혜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송옥주 · 박정 · 노옹래 · 변재일 ·
신창현 · 한정애 · 김경협 · 조웅천 · 이용득 ·
정세균 · 신경민 · 정은혜 · 김철민 · 김성수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박범계 · 정은혜 · 우원식 · 백재현 ·
이종결 · 고용진 · 송옥주 · 추미애 · 조승래 ·
박홍근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김태년 · 강병원 · 정재호 · 최재성 ·
한정애 · 추미애 · 황희 · 도종환 · 송옥주 ·
신창현 · 최운열 · 홍영표 · 이후삼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일 회부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9. 11. 1. 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
정양석 · 김동철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 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 정양석 · 김동철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 김학용 · 이장우 · 임이자 ·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배 · 정진석 · 강효상 · 박성중 · 정양석 · 김동철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 한정애 · 신창현 · 강훈식 · 강병원 · 유승희 · 김정호 · 김태년 · 남인순 · 안규백 · 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4일 회부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신창현 · 박완주 · 최인호 · 서영교 · 김태년 · 김병기 · 한정애 · 표창원 · 이종걸 · 김경협 · 노웅래 의원 발의)

11월 5일 회부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설훈 · 안호영 · 김철민 · 신창현 · 송영길 · 우상호 · 손혜원 · 민홍철 · 윤호중 · 한정애 · 노웅래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설훈 · 안호영 · 김철민 · 신창현 · 송영길 · 우상호 · 손혜원 · 민홍철 · 윤호중 · 한정애 · 노웅래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1. 5. 윤재옥 · 유민봉 · 이철규 · 신보라 · 최연혜 · 윤한홍 · 송석준 · 정점식 · 추경호 · 원유철 · 강효상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송석준 · 박덕흠 · 박인숙 · 김상훈 · 강석진 · 백승주 · 강효상 · 송희경 · 정점식 · 김정재 · 정용기 · 김경협 · 원혜영 · 조정식 · 임종성 의원 발의)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9. 김정우 · 원혜영 · 이재정 · 윤관석 · 김경협 · 조정식 · 이개호 · 박정 · 김정호 · 심기준 · 김두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안민석 · 윤영일 · 이상현 · 송갑석 · 김진표 · 최재성 · 윤후덕 · 김민기 · 김철민 · 전현희 · 이용득 의원 발의)

10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화경제기본법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추미애 · 백재현 · 신창현 · 김정우 · 박정 · 김부겸 · 이원욱 · 최재성 · 김태년 · 김병관 · 김진표 · 원혜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기동민 · 조웅천 · 이재정 · 김상희 · 신창현 · 박정 · 도종환 · 정춘숙 · 윤일규 · 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